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임 승 희

2010년 2월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지도교수 김 동 전

임 승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임승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2월

Military Formation and Conditions of the Local Forces
in the Jeju Region During Late Joseon Dynasty

LIM SEUNG-HE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0.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ilitary Formation and Conditions of the Local Forces in the Jeju Region During Late Joseon Dynasty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formation of the local forces in the Jeju region and the troop disposition, at different times, after the military reorganization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local military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by reviewing one of the remaining Jeju's cultural assets, 'Daejeonggun Gunbyeongdoan', the military register of the Dajeong magistracy in 1870. A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between the data from the military register and another available historic record of census register of the time, 'Hojeokjungcho'. The study intends to revisit and show how the local military force was 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will provide a fresh point of view.

There was an independent defense system formed in Jeju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region's military forces were under the command and control of the Jeju Magistrate. Later, when King Heonjong, in the 13th year of his reign (1847), declared a reorganization of the forces in the Jeju region, the mounted unit, 'Madae'; the local unit, 'Sogogun'; and the soldiers positioned at the office of the Magistrate, 'Beorabyeong' were newly added expanding the scale of the local military force. The reorganization also influenced and changed the defense system to add efficiency in the defense of the Jeju region, while it brought the effect of lessening the burden on the soldiers.

The 'Daejeong Gunbyeongdoan' military register made in Jeju in 1870 is a valuable document that clearly records the data on the soldiers, to include

their military positions and identifications. From such important records, it is very significant to be able to find out how the local forces were formed and what conditions the forces were exposed facing. According to the register, the types of soldiers assigned to the local forces in Jeju were 'Madae' mounted unit, 'Sogogun' general local soldiers, 'Seongjeonggun' castle defending soldiers, 'Gunsususol' logistics, 'Bonggun' soldiers in charge of the beacon mounds, and 'Yeongun' smoke signal soldiers. The force totaled 1,900 soldiers.

As noticed, the 'Daejeong Gunbyeongdoan' military register was written in 1870 and the 'Hojeokjungcho' census register was made around the same time. It should be safe to assume that the two records are related. Accordingly, the records of the soldiers on the military register were compared with the ones in the census register to find out what kinds of occupations they had prior to military assignment. The 970 soldiers whose residents were from the 12 villages of the Daejeong magistrate, out of the total of 1,900 registered soldiers, are studied in this paper. Among the 970 soldiers, 598 or 62% of them had a confirmed occupation matching the census register of the 12 villages.

The type of the soldiers' occupations varied depending on the soldier's military position, such as, 'Gasol' border patrol special officer, 'Cheonjong' high commissioned military officer, to 'Yuhak' gentry of higher social status, 'Yuhyang-byeolgan' and 'Pumgwan' government officer positions. However, most of them were obliged to fulfill their duty of military servi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is treatment between the different levels of occupations and social standings. They were the main manpower to form the local military forces in the Jeju region.

In conclusion,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formation of military ranks and positions, as well as, the surrounding conditions, by examining the dominating ranks of 'Sogogun', 'Madae', and 'A-byeong', as the local military organization in the Jeju region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Further, the

study on the military system of the special region of Jeju can be expected to give an important clue to recognize the historical uniqueness of the region, as differentiated from other areas, and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the local military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제주 지방군의 편제와 시기별 분포	6
1. 조선후기 지방군과 제주지역	6
2. 제주지역 지방군의 시기별 분포	22
III.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실태	35
1. 『대정군군병도안』의 내용과 특징	35
2.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편성	43
IV. 『호적중초』의 군병 직역과 『대정군군병도안』	50
1. 『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의 직역 실태	50
2.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의 비교분석	54
V. 맺음말	69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1> 제주와 전라도(감영·병영)의 군병 수	20
<표 2> 제주와 전라도 5개 진영(鎭營)의 군병 구성	21
<표 3> 현종 13년(1847) 이전 제주삼읍 정병(正兵)의 군역기록	26
<표 4> 『제주병제봉대총록』에 나타난 제주삼읍의 군제와 군역	28
<표 5> 『탐영사례』에 나타난 제주삼읍의 군제와 군역	30
<표 6>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전후의 군병 편제와 군역의 변화	33
<표 7> 『대정군군병도안』의 군병 편제	37
<표 8> 『대정군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특기와 직역의 분포	38
<표 9> 『대정군군병도안』에 ‘노(奴)’의 신분으로 기재된 사례	40
<표 10> 『대정군군병도안』에 기재된 성정군의 편제	44
<표 11> 1870년 대정현 12개 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의 직역 실태	52
<표 12>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현황	56
<표 13> 『대정군군병도안』의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58
<표 14> 『대정군군병도안』의 ‘마대’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60
<표 15> 『대정군군병도안』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61
<표 16> 『대정군군병도안』의 ‘봉·연군’·‘모슬·차귀진방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64
<표 17> 『대정군군병도안』의 ‘군수수술’·‘교직생’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66

그림 목차

<그림 1> 『대정군군병도안』의 마대 편성	46
<그림 2> 『대정군군병도안』의 속오군 편성	47
<그림 3> 1872년 『대정군지도』에 나타난 12개 마을 분포	51
<그림 4>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기재 사례	55



I. 머리말

한 사회가 국가를 이루어 살면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전쟁이었다. 이에 평상시에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고 유사시에는 변란을 진압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군(軍)’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제적인 질서를 유지해오던 조선시대 사회에서의 군사력은 대내적으로 지배체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사제도(軍事制度)¹⁾가 국가 통치의 열쇠를 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17세기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이 조선에 미친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었고 당시 조선 사회의 각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의 군사제도는 이전의 군사제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신병법(新兵法)을 도입하거나 무기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사제도의 확립을 꾀하였다. 또한 군사조직과 사회 구성 문제에 직결되는 군역제도(軍役制度)을 재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전란을 겪은 이후 중앙에는 5군영과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여 방위체제를 이루었고 지방의 경우에도 속오군(東伍軍)의 편성을 계기로 지방마다 여러 병종의 군대가 설치되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보병(步兵)인 속오군(東伍軍) 이외에도 기병(騎兵)인 마대(馬隊), 총수병(銃手兵)인 아병(牙兵)뿐만 아니라, 해안 방어의 요충지에는 방군

1) 대개 군사제도는 군대의 조직을 가리키는 군사조직, 훈련, 편성,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각종 법제적 체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특히 군사조직이란 효율적인 군사력의 결집과 그것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상층 지휘체계로서의 군관조직과 기본적 군사력으로서의 일반 병졸집단을 그 인적 구성분자로 포괄하고 있다. (김홍, 『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2001, 13~14쪽.)

(防軍)이 있었고, 각 읍성 및 진보(鎭堡)에는 성정군(城丁軍)과 유직군(留直軍)이 배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

또한 제주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늘 주변국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고, 조선후기 당시 표류선과 이양선의 출몰이 많아 지역 방어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라도관찰사로부터 군현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은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을 총괄하면서 통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군사면에 있어서도 제주목사로 하여금 방어사겸병마수군절제사(防禦使兼兵馬水軍節制使)를 겸하게 하여 절제도위(節制都尉)인 대정·정의현감을 지휘 감독하며 제주지역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방어체제로 구축하였다. 즉, 조정(朝廷)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지역이 국방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정부가 이러한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전라도관찰사가 가지고 있던 군현에 대한 통치행정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였고, 제주목사로 하여금 이러한 외적에 대한 대비 또는 천재지변 등의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섬이어서 방어할 곳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농업 생산력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호남 원병이 파견되어 방어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지원군제가 폐지되어 제주지역 방어는 대부분 제주도민이 전담하게 되었다. 정조 17년(1793) 제주지역의 병력은 정규군과 잡색군을 합하여 총 10,080명에 이르고 있는데,³⁾ 당시 제주지역 남자인구 27,853명의 약 36%에 해당할 정도로 군역의무자인 16~60세의 양인은 반 이상이 실제로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처럼 조선후기 제주지역 방어를 위한 군정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었으나, 당시 제주민들은 군사적·경제적인 압박으로 도망가거나 기근으로 인해 병이 들고 유랑 걸식하는 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군정(軍丁)을 확보하는데 많은

2) 김상욱,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273쪽.

3)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목 군역조, 대정·정의현 군역조 참조.

4)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39~140쪽.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1847년 제주군제 개혁 이후 누정(漏丁)의 색출을 통해 보다 많은 군역이 증대되는 한편 마대와 속오군의 증편되는 등 군병 편제의 새로운 개편을 가져왔다.

이상에서 언급한 조선시대 군사제도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쟁 직후 조선왕조의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부문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군과 이를 뒷받침하는 존재로서의 지방군의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 군제사(軍制史)는 주로 중앙의 주요 군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지방군 체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그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과는 달리 전근대사회에서의 ‘군(軍)’이 왕을 중심으로 한 정권을 보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시 하였고 이에 군제 또한 중앙군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지방군은 형식적인 지방방어체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 생각된다.

최근 들어 지방사의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조선후기 지방군의 근간이었던 속오군과 영장제를 비롯하여 이 시기, 밀접한 관계에 있던 군역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여러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지방군의 편제, 속오군 이외의 각 지방의 다양한 특수 병종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제주에 남아있는 『대정군군병도안』 군적자료를 통해 지방군의 편성과 이 시기 『호적중초』 자료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군병의 직역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의 지방군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사례를 들어 지방군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시대 군사제도와 관련한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이 두 시기에 해당하는 군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⁵⁾ 또한 임진왜란 이후, 중앙의 주요 군영과 지방의 속오군과 영장제도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군사제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지방군제의 편성 및 조련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5)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1968). ;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後期篇』(육군본부, 1976).
김홍, 『韓國의 軍制史』(학연문화사, 2001).

그리고 지방에 속오군을 비롯한 여러 병종들의 구체적인 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군안(軍案)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⁷⁾ 이 밖에 지방군제의 편제 구조와 지역별 방어체계의 변천 과정, 방어영의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사례로는 김상옥⁹⁾과 김우철¹⁰⁾의 연구가 유일하다. 먼저 김상옥은 제주지방 군사제도에 관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조선 후기 제주 지방 군대의 편성과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해 지었다. 특히 사료적 접점성과 통통제주지방의 주요 실태를 이었던 대의 편과 마대, 아병 등이 설치되지 시기를 유추하는 한편, 각 실태들에 소좌주지방관 파악직임(職任)태를 이었하여 통제시 해주 지 있으나 각 실태들에 편 제주지방병 파악신분에 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연구가 그 췌 김우철은 제주지급대의 편 파악 실태를 파악할 아병 는 『제주의 편적부(濟州東伍軍籍簿)』 자료분에 시하여 통 17세기 후반 지방 군사 파악의 편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강화·정비되었는지에 대해 연구 연구가 특히 ‘편적부’ 파악 내용 태를 바탕으로 제주악의 편 편성 파악 특징과 편 제주지의 편 파악 신분에 및 악지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군제사를 연구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여겨지나, 당시의 군적과 비교 분석할 만한 호적 중초 등과 같은 자료의 부재(不在)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6)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서대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營將制를 중심으로-』(혜안, 1999).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경인문화사, 2001).
- 7) 이현수, 「朝鮮末期의 軍籍 - 陸軍 博物館 所藏 軍籍文書의 分析 -」 『학예지』 3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3).
정구복, 「1596年 平安道 鎭管官兵編伍冊」 『고문서연구』 제5권(한국고문서학회, 1994).
김우철, 「成立期 東伍軍의 編成 實態 - 《鎭管官兵編伍冊》과 《鎭管官兵容貌冊》의 분석 -」 『한국사연구』 105집(한국사연구회, 1999).
- 8) 서대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집(동서사학회, 2000).
김우철, 「조선 후기 江原道 地方軍制의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24호(조선시대사학회, 2003).
김순옥, 「18, 19세기 江原道の 地方軍 편제」(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강석화, 「조선 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제34집(한국학연구원, 2004).
_____, 「조선 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제36집(한국학연구원, 2005).
손숙경, 「조선 후기 동래(東萊)지역 무임(武任)집단의 조직과 운영」 『사회와 역사』 제74집(한국사회사학회, 2007).
- 9)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_____,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 研究』(일지사, 1997).
- 10)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연구』 132호(한국사연구회, 2006).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지방군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군적자료로서 1870년에 작성된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조선후기 제주 지방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사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관찬문서로서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증보문헌비고』 등과 이러한 각 연대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의 경우는 시기별 지방관아 등에서 편찬한 『탐라지(1653)』, 『탐라순력도(1702)』, 『탐라방영총람(1760-1770)』, 『제주대정정의읍지(1793)』, 『제주병제봉대총록(정조년간)』, 『탐라지초본(1841-1843)』, 『제주계록(1846-1884)』, 『탐영사례(1854년경)』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흐름은 기존 연구의 성과와 더불어 군적과 호적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 사료를 토대로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성과 군병의 직역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II장에서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한 조선후기 속오군을 중심으로 한 지방군의 변화 양상과 제주에 남아 있는 지방군제에 관한 사료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지방군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대정군군병도안』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사회에서의 군적이 갖는 의미를 해명하는 한편, 『대정군군병도안』의 기재내용과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 각 병종별 편성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1870년에 작성된 『대정군군병도안』 자료와 이 시기 『호적중초』 자료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군적과 호적자료에 동시에 나타난 군병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당시 군적에 기재되었던 군병들이 각 마을별 호적자료에는 어떠한 직역으로 등재되었는지를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제주지방 군병들의 직역별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제주 지방군 편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은 앞서 연구되어진 자료들을 재검토하여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군제를 연구함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역사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조선후기 지방의 군사적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II. 제주 지방군의 편제와 시기별 분포

1. 조선후기 지방군과 제주지역

조선전기의 지방군제는 진관체제(鎭管體制)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¹¹⁾ 이후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의 부분적인 변화를 겪어오다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즉, 제승방략은 남·북 변경으로부터 이 민족의 침입이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침투 경로와 수단이 비교적 일정하게 되풀이되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방어할 필요에서 생겨난 제도였다.¹²⁾ 그러나 제승방략은 전면전(全面戰)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의 군사지휘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급격히 부상하는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고, 한 방어선이 무너지면 적이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점이 노출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우려는 곧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중에 제승방략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군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군(明軍)이 참전하여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던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함으로써, 그 우수성이 입증된 척계광(戚繼光)의 절강병법(浙江兵法)¹³⁾을 받아들여 중앙에는

11)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20일 경술조 ;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1월 15일 무오조 ;

세조 12년(1466)에 완성된 진관체제는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자전자수(自戰自守)함으로써 해당 진관이 함락하더라도 다음 진관까지 적이 침투하는 데에 여유가 있게 하여 인근 진관 및 중앙으로부터 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체제이며, 전국의 행정조직인 읍을 동시에 군사조직 단위인 진으로 편성하여 각 읍의 수령에게 군사지휘관의 임무를 겸하게 하였다. 그러나 진관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지만 당시 군역제의 동요로 군역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왜구나 여진족의 침입 루트가 일정하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태원, 『조선후기 영장제 연구-향촌지배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2쪽).

12)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경인문화사, 2001), 21쪽.

13) 절강병법(浙江兵法)은 ‘척법(戚法)’ 또는 ‘기효신서법(紀效新書法)’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절강성(浙江省)을 지키던 척계광(戚繼光)에 의해 『기효신서(紀效新書)』라는 병서가 나온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절강병법은 명(明)의 남부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왜의 단병전술(短兵戰術 : 槍·劍을 위주로 한 近接戰에 유리)과 조총(鳥銃)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기병은 쓰지 않되 방패와 조총 그리고 전통적인 화기도 사용하면서 조총의 탄환을 막기 위해 솜옷까지 착용한 전술이다. (서태원, 『속오군의 설치의의에 대한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논문집』 제13호, 기전여자전문대학교, 1993, 21쪽).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지방에는 속오군(束伍軍)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후에는 각 지역단위 지방군의 군사적 효율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한 운영체제로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성립시킨다.¹⁴⁾

이처럼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후기의 군사제도가 재정비 되면서 지방에서도 속오군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군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다음의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가) “조종(祖宗)의 제도(制度)에는 8도의 각 큰 고을에 모두 진관(鎭管)을 두어 병마절제사라고 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은 진실로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는 진관의 읍이 주진(主鎭)이 되어 그 소속된 고을을 검칙(檢飭)하여 일체의 병기를 다루고 군대를 훈련하는 일을 모두 다스렸고, 유사시에는 진관이 또한 각기 소속된 군병을 인솔하고 차례차례 정돈하여 주장(主將)의 약속을 듣게 하였으니, 조종(操縱)과 신축(伸縮)은 오직 주장에게 달려 병기입니다. 그리고 한 진관의 군병이 비록 패배하여 무너진다 하여도 다른 진관이 각기 대병으로서 차례로 굳게 지켜 혹 앞진관건로막기도 하고 혹 뒤를 습격하기도 하며 혹 좌우를 뒤흔들기도 하니, 적이 비록 승세를 타더라도 감히 쉽사리 충돌하지 못하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¹⁵⁾

(나) 병법(兵法)에서는 수를 나누어 관할(管轄)하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연후에야 조리가 정제되고 호령이 통하게 되어 군사를 동원하는 데에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장관들은 대소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통솔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다해 훈련시켜 두었다가 한번이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로써 징용하게 됩니다. 각처의 장수들이 그 군사를 합해서 인솔하여 한 곳으로 모였다가 행군합니다. 그 군졸들도 역시 자기 장수에게 예속되는 것이 익숙하여 끝까지 서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14) 앞서 설명되어진 ‘진관체제’와 ‘제승방략체제’는 병력의 동원 방식 및 ‘분군(分軍)’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속오군’과 ‘영장제도’는 병력의 대오(隊伍) 편성 및 조련(調鍊)의 지휘 계통 등에 초점을 두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김순옥, 『18·19세기 江原道の 地方軍 편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쪽).

15)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9일 정미조, 「祖宗之制 八道各官 皆有鎭管 謂之兵馬節制使 立法本意 實非徒然 平時則鎭管之邑 爲主鎭 而檢飭其屬邑 一應操兵訓練軍伍之事 皆可治之 有事則鎭管 又各率其所屬之軍 鱗次整齊 以聽主將約束 操縱伸縮 惟將之爲 且一鎭管之軍 雖或奔潰 而他鎭管 各以大兵 次第堅守 或扼其前 或躡其後 或撓其左右 賊雖乘勝 不敢容易衝突 其勢然也」

서도 사랑하여 감히 구차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록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에 뛰어들게 한다 하더라도 어찌 무너져 흩어질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병졸들은 장수에게 예속되지 못하고 장수는 병졸들을 통솔하지 못하여 평상시에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 접촉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위급한 때를 만나면 모두 들판이나 거리에서 군사들을 모아 놓으니, 어리둥절해서 소속도 알지 못합니다.¹⁶⁾

위의 사료 (가)과 (나)는 선조 27년(1594) 영의정이었던 유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 당시 패전의 원인을 ‘제승방략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종조(祖宗朝)의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복귀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의 사료에서 유성룡이 차자(筭子)¹⁷⁾를 올려 제승방략의 모순이 장수와 병사가 분리되어 있어 유사시, 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큰 힘을 얻을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진관체제로의 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선조가 동의를 함으로써 지방군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진관체제의 복구와 더불어 군대조직 편제로서의 속오군의 시행은 지방군을 재건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시 급박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기효신서(紀效新書)』¹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에 설치된 속오군이 언제부터 성립되었으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속오(束伍)’란 명칭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대오(隊伍)를 단속한다는 뜻으로¹⁹⁾ 이는 곧 군대의 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전국시대 병서

16) 유성룡, 『西厓集』 권5, 「陳時務筭」: 「兵法最以分數管轄爲重 然後條理整齊 號令通行 調發無敢參差矣 故中原將官 勿論大小高下 皆有所統之軍 平時盡心操練 一有事警 以此徵用 各處之將 合率其軍 聚于一處而行 其軍卒亦習隸於其將 而知其終始相隨 故畏而愛之 不敢有苟且之心 雖使之赴湯蹈火 豈有潰散之患乎 我國不然 兵不隸將 將不統兵 平時邈不相接 一遇警急 皆聚兵田野閭閻之間 瞿瞿不知所屬」

17) 차자(筭子):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이다. 문집에서는 상소문과 차자를 소차(疏筭)라 하여 같은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상소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올릴 수도 있다.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5,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1쪽).

18) 척계광, 『기효신서』 권1, 속오편(束伍篇), 명활법(明活法).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르면 5인을 1伍로 하여 2伍인 10인을 1隊의 기준으로 하되 대장(隊長)과 화병(火兵)을 포함하여 12인으로 1隊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3~5隊로 1旗를, 3~5旗로 1哨를, 3~5哨로 1司를, 3~5司로 1營을, 3~5營으로 1師를 구성하도록 했다.

(兵書)의 하나로 전해지는 『위료자(尉繚子)』의 ‘속오령(東伍令)’²⁰⁾에도 대오를 편성한다는 의미로 속오(東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과 지방의 속오군 성립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오는 ‘속오법(東伍法)’이라 하겠다.²¹⁾

이와 같이 속오편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다음의 기록에서 당시 『기효신서』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군졸이 궤산(潰散)되지 않게 하는 가장 긴요한 것은 오직 속오(東伍)에 있으니, 『기효신서(紀效新書)』 중에 장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한 말이 많지만 그 요점은 모두 ‘속오’ 한 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졸만 많이 모아 놓으면 적을 방어하는 줄로만 알고, 대오를 결속하고 부대를 나누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질서가 어긋나고 문란해져서 두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군대로써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졸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 죄가 사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에게 있는 것이니, 그때는 속오의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²²⁾

이렇듯 조선후기 군제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기효신서』의 내용은 당시 조선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 전란이 발발한 상황에서, 이전의 체계적이지 못한 군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롭게 군제를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선조 27년(1594) 12월, 각 지방에 속오군(東伍軍)이 성립되어 지방군 조직의 편제는 속오법에 의하고, 속오군의 무기체계는 삼수기법(三手技法)에 두려고 했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9)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2월 5일 신묘조, 「兵家所謂東伍二字 以其團東隊伍之意」

20) 『尉繚子』 권4, 「東伍令」 제16, 「東伍之令曰 五人爲伍 共一符 收于將吏所亡伍而得伍 當之」

21) 차문섭, 「東伍軍 研究」 『朝鮮時代 軍制研究』(단대출판부, 1973), 180쪽.

22) 『선조실록』 권56, 선조 27년 10월 21일 을축조, 「欲其軍卒之不爲潰散 則其最所緊要處 唯在於東伍 紀効新書中 所論將家之事 其說多矣 然其精神 盡在於東伍一篇 今人徒知多聚軍卒 則可以禦賊 而不知有東伍分部之法 故參差紊亂 不成頭緒 以此而可望於赴湯蹈火乎 故我國士卒之善潰 其罪不在於士卒 而在於將帥 其時不知有東伍之法故也」

각도에 교사(敎士)를 보내 삼수기법(三手技法)을 훈련시키고 [포법(砲法)·사법(射法)·감법(砍法)] 초군(哨軍)을 배치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켰고 외방 또한 초군이나 속오군(東伍軍)을 배치했는데, 양민이나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장정을 선발하여 정원을 채운 다음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제도로써 결속시켜 삼수를 교련하고, 어사(御史)를 나눠 파견하여 시험케 하니, 이로부터 군액(軍額)이 상당히 증가되었다. … 그러나 천인(賤人)은 모계(母系)를 좇는 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군액도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공사(公私)의 천인을 모두 징발하여 속오군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척씨의 제도는 또 세조 대왕이 정한 진서(陣書)와는 달랐다. 즉 경군(京軍)은 관에서 녹양(廩養)하여 병·농이 이미 나뉘었는데 반해 외군(外軍)은 이미 본역(本役)이 있는데도 다시 속오군에 편입시키면서 급보(給保)나 녹식(廩食)이 없었다. 그래서 초출된 자들은 고역을 원망하여 도망하는 자가 속출했으므로 주현(州縣)의 폐해가 되었다.²³⁾

위 기사를 통해 속오군의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속오법에 의해 편제된 속오군 조직의 무기체계는 ‘삼수기법(三手技法)’에 두고자 했다는 점이다. ‘삼수기법(三手技法)’는 포법(砲法)·사법(射法)·감법(砍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법(砲法)은 조총이나 대포 등 화기를 이용하는 기술이었고, 사법(射法)은 궁시(弓矢) 등을 이용하는 기술이었다. 감법(砍法)은 살법(殺法)으로 더욱 많이 불리웠는데, 검 또는 당과(鎗鈹), 낭선(狼筈) 등의 병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²⁴⁾ 이는 활과 화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장병전술(長兵戰術)을 보완하여 단병전술(短兵戰術)을 가미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근접전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총병인 포수와 살수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통적 기예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시켜 삼수병 체제로의 전술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속오군을 담당한 계층을 살펴보면 기존에 군역의 부담을 지고 있던

23) 『선조수정실록』 권28,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조, 「遣敎士于各道 訓習三手技法(砲射砍法)置哨軍 時京城設訓練都監 募兵訓練 而外方亦置哨軍 或東伍軍 毋論良民 公私賤人 選壯充額 東以戚書之制 教練三手 分遣御史試閱 自是軍額頗增益矣 … 然而賤人從母之法久行 良民日縮 軍額大耗 至是 盡用公私賤人入東伍 而戚氏之制 又與陣書異同 京軍則自官廩養 兵農已分 外軍則既有本役 又入東伍 無給保 無廩食 被抄者怨苦 逃亡相繼 爲州縣之弊矣」

24)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경인문화사, 2001), 39쪽.

양인뿐만 아니라 공천(公賤)과 사천(私賤)²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군역을 충당하고자 일반 양민의 역으로 간주되었던 군역(軍役)을 천민에게까지 담당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속오군의 겸역(兼役)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중앙군인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군병의 경우는 그 자체가 본역(本役)이었던 것과 달리, 지방군인 속오군의 경우 이미 본역(本役)인 양역(良役)과 천역(賤役) 이외에 ‘속오역(東伍役)’²⁶⁾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속오군의 겸역 문제와 더불어 군역에 천민이 편성되었다는 점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해체문제와도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속오군의 편성이 조선후기 신분문제에서 갖는 의미를 해명하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각 지방에 거주지 중심의 훈련과 방어에 주안점으로 두고 성립된 속오군은 선조 28년(1595) 10월 유성룡이 경기·황해·평안·함경의 4도(道)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면서 이 지방의 속오군 조직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²⁷⁾ 즉, 위의 4도(道)의 경우 진관체제를 중심으로 한 속오군의 조직이 선조 29년(1596) 5월에 거의 정비되어 지방군의 성적책(成籍冊)이 작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파악한 이유는 선조 29년(1596) 당시에 작성된 속오군의 편제자료로서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과 『진관관병용모책(鎭管官兵容貌冊)』²⁸⁾ 이 2가지 자료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자료인 경우, 영변(寧邊)·안주(安州)·구성

25) 속오군의 신분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1) 『선조실록』 권 65, 선조 28년(1595) 7월 9일 경진조, 「從其見在民丁 而勿論良人公私賤內奴庶孽, 分等抄出 以年少壯健伶俐 可以訓習者爲上等」 장정은 양인(良人)·공천(公賤)·사천(私賤)·내노(內奴)·서얼(庶孽) 등을 막론하고 등급을 나누어 뽑아내되 나아가 젊고 건장하며 영리하여 훈련시킬 만한 자로 상등(上等)을 삼아야 합니다.
 (2) 『선조실록』 권 94, 선조 30년(1597) 11월 16일 계묘조, 「非但賤人 至於兩班儒士衙前之類 不堪土木之役者 亦在其中」 천인(賤人)뿐만 아니라 양반(兩班)·유사(儒士)·아전(衙前)의 무리로서 토목(土木)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는 자까지도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26) 속오역(東伍役)은 군역(軍役)을 포함한 신역(身役)을 담당하던 양인·천인들이 겸역(兼役)의 형태로 지고 있던 부담이었다. (김우철, 「조선후기 東伍役의 徭役化 과정-東伍軍 操鍊制度的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제3·4호, 고려사학회, 1998, 321쪽).

27) 김홍, 『한국의 군제사』(학연문화사, 2001), 148쪽.

28) 고문서학회,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진관관병용모책(鎭管官兵容貌冊)」 『고문서연구』5집, 고문서학회, 1994. 원문 자료 소개 참조.

(龜城)·의주(義州) 이 4개 진관 소속 속오군의 편성과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 평안도 지방의 속오군 편성체제로서 그 내제(內題)에 ‘萬曆二十四年五月日 安州鎮管官兵編伍冊’으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후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3월 기해조 기사²⁹⁾를 통해 늦어도 선조 30년(1596)를 전후하여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속오군이 전국적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화된 진관체제에 의한 속오군의 편성은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선조실록』 선조 28년 1월 을미조 기사³⁰⁾에서 당시 진관체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진관체제의 지휘계통은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³¹⁾에 이르기까지 일원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진(主鎭)의 병마절도사는 전임관(專任官) 이외에 관찰사(觀察使)를 겸임하고 있었고, 절제사 이하의 군직은 부윤(府尹)이하의 수령들이 겸임하고 있었다. 반면에 거진(巨鎭)과 제진(諸鎭)에는 모두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상벌권(賞罰權) 등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제사가 제대로 절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

또한 지방수령에 의한 속오군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단(弊端)과 관련된 기

29)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9일 기해조, 「... 忠淸全羅慶尙等道 申明鎭管束伍之法 置營操練 使形勢相連 爲合力必守之規 乃保障之大計 令當道都體察使 商量便否 處之宜當」... 충청·전라·경상도 등에 진관(鎭管) 속오법(束伍法)을 거듭 밝혀 영(營)을 세워 조련(操鍊)시키고 서로 형세를 연결하여 협력해서 만드지 지키게 하는 것이 곧 보장(保障)의 대계(大計)이니, 당도(當道)의 도체찰사(都體察使)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0) 『선조실록』 권59, 선조 28년 1월 22일 을미조, 「鎭管之制則是矣 予思之 鎭管無權 此法之所以不行也 鎭管無權 則傍邑誰從 予平日粗有所思 故言之 同是守令 而別無刑賞之柄 何能節制乎」 진관의 제도는 옳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진관에 권한이 없으므로 이 법이 행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진관에 권한이 없으니 곁에 있는 고을들이 누가 따르겠는가? 내가 평소에 약간 생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다 같은 수령이고 별도로 상벌의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능히 절제하겠는가.

31) 진관체제에 지방의 지휘계통은 ‘主鎭-巨鎭-諸鎭’으로 되어 있고, 군사지휘관의 명칭과 품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육군	수군
주진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종2품 ◦ 우후(虞侯) : 종3품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정3품 ◦ 우후(虞侯) : 정4품
거진	◦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정3품 ◦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 종3품	◦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 정3품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종3품
제진	◦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종4품 ◦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 종6품	◦ 만호(萬戶) : 종4품

(『경국대전』 권4, 兵典, 外官職條를 참조하여 표 작성.)

32)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경인문화사, 2001), 35~36쪽.

록들이 다음의 『목민심서』와 『조선왕조실록』 사료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가) 지금의 소위 속오군(束五軍)이라는 것은 사노(私奴)등의 천인들로 역지로 수를 채웠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한데 섞어 대오(隊伍)를 편성하였다. 그 전립(戰笠)은 썩은 외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전복(戰服)은 등딩굴로 어지럽게 엮은 것 같으며, 백 년 묵은 칼은 자루만 있고 칼날이 없으며, 3대를 내려온 부서진 총은 불을 당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대오(隊伍)는 오랫동안 비어서 군적에 사람과 귀신이 이름이 서로 섞여 있고 입시로 사람을 고용하여 하루의 군역에 응하게 한다. 법을 만든 당초부터 쇠퇴하고 폐단됨이 이와 같았고 지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³³⁾

(나) 각 도의 속오군(束五軍)은 본래 훈련시켜서 다급한 시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군(中軍) 이하 제 장관 등이 훈련시킬 의사는 없고 오로지 수탈과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망이나 사망으로 인한 결원을 충당할 때와 진을 익히고 재능을 시험할 때에 너물의 많고 적음을 보아 임의로 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집을 짓거나 농사짓는 일과 온갖 부러먹는 일들을 가노(家奴)나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살피지 못하고 수령이 금하지 못하여 군사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마치 도탄(塗炭)에 있는 것과 같으나 먼 지방에 있는 백성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³⁴⁾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속오군은 일신양역(一身兩役)의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중앙군사력 강화를 위해 각 지방의 병력을 차출하여 결원(缺員)을 보충하고자 이중의 역(役)을 부과하는 등, 각 지방 수령들의 수탈과 학대가 계속하여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속오군제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폐단은 후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본다면, 이러한 폐단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조선후기 속오군을 비롯한 지방군이 군사로서 인식되

33) 정약용 저/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IV)』(창작과 비평사, 1984.), 155쪽.

34)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21일 신유조, 「各道束五軍 本爲操練 以須緩急之用 而中軍以下諸將官等 無意教訓 專事侵虐 逃故充定及習陣 試才之際 惟視貨賄多少 任意操縱 至於造家 作農 凡百使喚之事 無異家奴 監司不能察 守令莫之禁 以致軍情愁苦 如在塗炭 遠方之民 無所告訴」

기보다는 점차 중앙군영이나 지방감영 등에 소속된 표하군이나 아병 등 일부 직업군인적 성격을 갖는 소수의 병력을 양성하는 재정부담증으로 인식한 결과라 사료된다.³⁵⁾ 이처럼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한 속오군의 편성에 있어 지방 수령중심의 폐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임 무신으로서의 영장(營將)³⁶⁾이 설치되는 배경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18세기 들어와 속오군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제대로 그 실효가 나타나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새로운 병종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병(騎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병종의 신설과 아병과 같은 수령 친병의 설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지역은 방어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예로부터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바다를 매개로 한 교역의 장을 활발하게 형성해 왔고, 주변국들의 해상 근거지로써 약탈 또는 침략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3~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왜구의 빈번한 침입은 제주지역 방어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가) 옛 늙은이에게 물어 보니 다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 우봉(牛峯)과 대정현 서쪽 죽도(竹島)는 자고로 왜선이 숨어 정박하여서 가장 요해의 땅이 되었는데, 우도(牛島)의 인근에 있는 수산(水山)과 죽도(竹島)의 인근에 있는 서귀(西歸) 방호소에는 모두 성곽이 없사운데, 만일 왜적이 밤을 타고 돌입해오면 군사가 의지할 곳이

35) 강석화, 「朝鮮後期 軍役制度의 變化(上)」 『군사』21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105쪽.

36) 영장제(營將制)는 속오군 등 지방군의 훈련과 지휘를 담당하면서 지방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장은 무관 출신으로 임명되어 군사훈련을 전담하는 관리로써 동계 농한기에 속오군을 소집하여 진법 훈련과 포술, 검술 등 개인기 훈련을 시행하였다. 전담영장제가 실시되면서 그 이전까지 지방의 수령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행정권과 군사권이 일부 분리되어 수령은 속오군을 비롯한 병력의 소집과 동원을 담당하고 군사훈련은 영장이 전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반발과 유능한 무신의 부족,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병자호란 이듬해, 전담영장제(專擔營將制)가 폐지되고 지방 수령들이 병력의 관리와 조직, 훈련 등을 모두 맡는 겸영장제(兼營將制)로 전환되었다. 이후 전담영장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효종대였는데, 이마저도 다시 붕괴되기 시작하여 수령겸직으로 변화된 지역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청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전담영장이 감축되면서 그 이전부터 이미 소홀히 시행되던 속오군의 훈련은 더욱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강석화, 위의 논문, 104~105쪽).

없사와 응적하기에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을 요량하여 성을 쌓게 하시고 적변을 대응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³⁷⁾

(나) 본주는 적침을 받을 요충 지역이 매우 많은데, 3읍(邑)에 방호(防護)하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목관(牧官) 동쪽에는 7~8포(浦)가 있고, 서쪽에는 17포가 있고, 정의(旌義)·대정(大靜)에 각각 13포가 있어 대소의 포가 모두 방호소에 속하였습니다. 포소(浦所) 60여 곳에 방호는 9개소뿐이며, 군사는 강한 병졸이 없고 통솔하는 사람도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호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으며, 목사는 홀로 한 귀퉁이를 진수(鎭守)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데, … 왜구가 변방을 범하여 돌입한다면 참으로 염려됩니다. 신은 원컨대 지금부터 사변이 가라앉을 동안은 7포에 각각 권관(權管)을 두어 조방장(助防將)으로 하되, 무략(武略)과 담용이 있는 자를 가려서 진수하게 하여 방호를 실하게 하소서.³⁸⁾

위의 사료 (가)는 세종 21년(1439)에 제주지역 진성(鎭城)의 축조가 정비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다. 당시 죽도(竹島:차귀도) 인근에 있는 차귀방호소와 우도(牛島) 인근에 있는 수산방호소를 축조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료 (나)는 중종 5년(1510) 제주부사 김의중(金義中)이 상소한 내용으로, 당시 제주도내에는 포소가 60곳에 달하며 이에 9개의 방호소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또한 유명무실하자 이러한 방호소를 통솔하며 왜구의 방어에 대비할 만한 인재를 육성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어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해야 할 곳은 많았으나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었던 까닭으로 군사력 확보에는 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정에서도 이러한 제주지역 방어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다음의 기록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37)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윤2월 4일 임오조, 「詢諸古老 皆云 旌義縣東牛峰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右牛島隣近水山竹島隣近西歸防護所 竝無城郭 儻倭賊犯夜突入 則軍士無所依據 應敵勢難 請量宜築城 以應敵變」

38)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7월 10일 갑자조, 「本州受敵要衝之處甚夥 而三邑防護之所則甚少 牧官東面有七八浦 西面有十七浦 旌義大靜各有十三浦 大小之浦 皆屬於防護所 浦所六十有奇 而防護則只有九所 軍無控弦之卒 領軍者亦非其人 故有防護之名 而無防護之實 牧使獨鎭一隅 無如之何 … 若有倭寇 犯邊突入 則誠爲可慮 臣願自今寢變之間 於七浦 各設權管 而助防將 擇武略膽勇者 差遣守鎭 以實防護」

주상이 이르기를 “적이 만일 제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해에 비록 신급제(新及第) 1백 인을 보냈으나 또한 무엇이 방어에 보탬이 되겠는가. 제주가 비록 육지처럼 쉽게 장구(長驅)할 수는 없으나 적이 전함(戰艦) 1천척으로 곧장 항구에 침입 상륙하여 영책(營柵)을 설치하고 지구전을 획책한다면 우리나라 병력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비변사는 필시 기획하여 조치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비변사는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들으니, 제주는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한산도(閑山島)에만 치중하고 제주는 아예 제쳐놓습니다. 적이 만약 이곳에 웅거하게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원(中原)에도 또한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를 수 있습니다. 적이 이러한 형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됩니다.”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는 수령을 선택하여 군사를 늘리고 군량을 운반할 뿐이다. 이밖에야 무슨 조치할 일이 있겠는가.”³⁹⁾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조는 왜적이 만약 제주를 해상 근거지로써 삼아 지구전(持久戰)을 획책(劃策)하고자 한다면 조정의 병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대비책으로서 수령⁴⁰⁾을 선택하고 원병(援兵)과 군량을 지원한다는 조치를 취할 뿐, 더 이상의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정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제주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호남원병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는 다음의 두 사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가) 좌우위군영(左右衛軍營)을 설치하여 호남원병(湖南援兵)을 거주케 하였다. 관

39)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1월 17일 갑신조, 「上曰 賊若奪據濟州 則不可說也 頃者雖送新及第一百一人 亦何補於防禦哉 濟州雖不似陸地之爲長驅 賊以戰艦千艘 直犯港口而下陸 設營柵 爲久持計 則我國兵力 豈有抵敵之理乎 備邊司必已規畫措置矣 成龍曰 備邊司則無措置之事矣 聞濟州軍糧乏小云 而全羅道 以致力於閑山島 全忘濟州 賊若雄據 則非徒我國不能抵當 中原亦可一航風而到 伊賊皆知此形勢 尤用悶慮 上曰 備邊司 擇守令 添兵運糧而已 此外有何措置之事乎」

40) 조선후기 제주 목사의 경우 해안 방어의 요충지인 제주의 수령이라는 점에서 무관 출신이 많이 파견되어 졌다. 이로 인한 폐단도 많았지만, 무관 수령에 의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 판관을 대간(臺諫) 또는 시종신(侍從臣)으로 임용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안 방어와 제주 도민에 대한 올바른 정사를 행하고자 문음부(文蔭武 : 문관·음관·무관)뿐만 아니라 유생에 이르기까지 수령의 천거 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김상욱,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275~276쪽).

덕정 동쪽에 있었으니 옛날에 호남원병이 여기에 있었고, 호남원병을 파한 후에는 심약(審藥), 검률(檢律), 왜학(倭學), 역학(譯學), 무학(武學), 진무(鎭撫), 지인(知印), 기보병(騎步兵), 궁시인(弓矢人), 공장(工匠), 취라(吹螺), 방포(放砲), 아병(牙兵), 나장(羅將) 등이 모두 거하였다.⁴¹⁾

(나) 전라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이 장계(狀啓)하기를, “제주(濟州)의 원병(援兵)은 매년 3월 초에 서울의 상번기병(上番騎兵) 가운데에서 5백 명을 뽑아내어 입송(入送)시키는 것이 원래의 격례였습니다. 그런데 임진년 이후로 군사의 수요가 적어 2백 명을 감하고 3백 명만 입송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유년에 입송시킨 뒤 교체가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오랫동안 수자리 살면서 자기들만 고통을 당한다며 원망하는 데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니 매우 가련합니다. …”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제주의 입방 군사(入防軍士)는 3년이 지났는데도 교체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자기들만 고통을 받는다는 원망이 없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육군(陸軍)에서 뽑아서 숫자대로 교체토록 입송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방어하는 일이 그야말로 급박한 실정입니다. 교대할 적에 허술해질까 염려되니 미리 행장을 꾸리게 하였다가 가을이 되어 방어가 좀 험하게 된 뒤에 입송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뢰는 대로 윤허하였다.⁴²⁾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매달 3월 초에 기병 가운데서 500명을 차출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에는 군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300명의 원군만을 파견하여 제주지역 방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정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광해군 12년(1620)에 호남원병의 지원도 혁파⁴³⁾되기에 이른다.

41) 김석익, 『탐라기년(耽羅紀年)』, 중종 7년, 「左右衛軍營 以居湖南援兵 在觀德亭東 在昔湖南援兵 來接于屯 接兵罷後 審藥 檢律 倭學 譯學 武學 鎭撫 知印 騎步兵 弓矢人 工匠 吹螺 放砲 牙兵 羅將等 皆居之」

42)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1월 9일 갑인조, 「全羅道巡察使韓孝純狀啓 濟州援兵 每年三月初 京上番騎兵 除出五百名入送 自是流來格例 而壬辰以後 軍士數小 二百名減 只三百名入送矣 丁酉入送之後 不得交遞 至今 仍留 久戍偏苦之怨 在所不免 極爲矜惻 … 啓下 備邊司回啓曰 濟州入防軍士 已過三年 尚不得交遞 果不無偏 苦之冤 所當抽發陸軍 如數換送 而目今防禦正急 遞代之際 恐有疎虞之患 預爲裝束 待秋成防歇入送事 行移何 如 啓依允」

43) 이원조, 『탐라지초본』 권3, 제주목 변정조(邊情條) 전수(戰守), 「湖南援兵三百八十三名每年春入來翌年替番 分處觀德亭前左右衛廊以爲防秋之計萬曆庚申革罷」 호남원병 383명이 매년 봄에 들어와서 다음 해에 교체하였다. 관덕정 앞의 좌우위랑(左右衛廊)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만력 경신년(광해군 12년, 1620)에 혁파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이 설치되어 중앙군 편제가 재정립되면서 지방에도 속오군 등 여러 병종의 군대가 편성되었다. 또한 제주지방의 경우는 병력의 부족으로 숙종 3년(1677)에 수군이 혁파⁴⁴⁾되면서 육군만으로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정규군으로는 속오군(東伍軍), 마대(馬隊), 아병(牙兵)이 편성되어 있었고 비정규군으로는 관아, 창고, 과원 등에 배치되어 수직(守直)을 하거나 잡역을 담당하는 잡색군(雜色軍)이 조선후기 제주지역 군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군제가 어떠한 계층에 의해 지휘·감독되었으며, 타 지역 지방군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조선후기에는 제주목사가 통치행정 권한 이외에,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제주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는 군현의 행정구조상 다른 지역은 그 상급지방행정기관인 도(道)에 직접 연결되어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이와 달리 전라도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군현에 대한 상당부분의 지휘감독권을 제주목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제주목에서 대정·정의현을 총괄하여 통치행정상 적절하게 통제해 나가고자 한 것이었다.⁴⁵⁾

그리하여 군사면에 있어서도 제주지역은 절제사가 주재하는 거진(巨鎭)을 두어 독립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즉, 제주목사로 하여금 제주 방어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는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와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를 겸하게 하였고, 절제도위(節制都尉)가 주재하는 정의·대정 양진(兩鎭)을 관할하여 지휘·감독하며 제주지방 전체가 하나의 방어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⁴⁶⁾

44)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5월 8일 계미조. ; 숙종 3년(1677) 수군이 혁파되기 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효종 4년(1653)에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한 바 있는 『탐라지(耽羅志)』 군병조(軍兵條)에는 제주성 소속 수군이 152명, 보인이 각 2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조천, 별방, 애월 등에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 수가 부족하여 전선(戰船)의 격군은 포작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수군이 혁파되고 난 뒤 1780~1782년 경에 작성된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목 수군조(水軍條)의 기록을 보면, 「昔存今無」라고 하여, 18세기 말에는 수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45)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74~75쪽.

46)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19세기 濟州社會 研究』(일지사, 1997), 61쪽.

이처럼 제주지역의 경우 영장이 따로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목사가 병마수군절제사와 수군방어사를 겸하여 육군과 수군을 통제하였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당시 영장(營將)이 육군과 수군을 총괄하여 통제하였던 강원도 삼척지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삼척지역의 경우 현종 13년(1672)부터 영장이 삼척포진(三陟浦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하면서 육군의 훈련 및 지휘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해안 방어까지 그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또한 육진(六鎭)의 경우도 제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장(營將)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는 숙종 4년(1678)에 “육진(六鎭)은 강을 따라 바둑돌처럼 건너편에 벌여 놓은 채 각각 적과 대치하고 있으나, 군병이 모두 영장소속이 되어 성을 지킬 수 없다”⁴⁸⁾는 권대운(權大運)의 주장이 받아들여 전년에 창설되었던 영장이 혁파된 바 있었다. 이처럼 영장이 혁파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영장제 하에서는 병력지휘권을 영장이 가지므로 지휘권이 없는 수령이 평상시에 군사들을 관리할 수 없었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된다.⁴⁹⁾

한편 제주지역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도 감영(監營), 병영(兵營)과 마찬가지로 중군(中軍)⁵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종5품(從五品)인 제주판관(濟州判官)이 중군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군은 각 군영(軍營)의 대장 또는 사(使) 다음의 장관직(將官職)⁵¹⁾으로 절도사·방어사 등을 보좌하며, 군사적으로는 속오군 등 지방군의 훈련을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중군(中軍)의 존재는 다음 <표 1>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47)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본집(한국동서사학회, 2000), 128~129쪽.

48)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9월 8일 병오조, 「權大運曰 不特淸北 北路六鎭 在前各自統兵 入城保守 蓋六鎭 循江基布 越邊俱是敵境故也 自頃年創設營將以來 六鎭軍兵 竝爲營將所屬 拋棄信地 團聚一處 遇警之日 無以守城 六鎭營將 不可不速罷 而使爲各自保守之地矣」

49)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제36집(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308쪽.

50) 다음의 사료들은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중군(中軍)’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 이원진, 『탐라지(耽羅志)』 효종 4년(1653), 장관조(將官條), 「中軍判官例兼」
- 일본동경대학소장본, 『탐라지(耽羅誌)』 현종 14년(1848) 이후 추정, 장관조(將官條), 「中軍判官例兼」
- 『제주읍지(濟州邑誌)』 광무 3년(1899), 장관조(將官條), 「中軍判官例兼」 <奎10797>
-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1760-1770), 관하각읍진급봉연대조(官下角邑鎭及烽烟臺條), 「判官兼中軍」

51) 『대전회통(大典會通)』 권4, 병전(兵典) 외관직조(外官職條).

<표 1> 제주와 전라도(감영·병영)의 군병 수

지역 군병	제주 (濟州)	전라감영 (全羅監營)	전라병영 (全羅兵營)
중군(中軍)	1名	1名	1名
별장(別將)	2名	1名	-
천총(千摠)	3名	3名	3名
파총(把摠)	6名	6名	9名
성장(城將)	4名	-	-
초관(哨官)	52名	42名	45名
지곡관(知穀官)	-	2名	17名
교련관(敎鍊官)	13名	-	-
기패관(旗牌官)	259名	161名	88名
별군관(別軍官)	-	200名	-
장교(將校)	45名	-	-
군관(軍官)	407名	-	230名
대변군관(待變軍官)	578名	-	-
훈도(訓導)	28名	-	-
무학(武學)	80名	-	-
정로위(正虜衛)	80名	-	-
갑사(甲士)	70名	-	-
마병(馬兵)	10哨	2哨	-
아병(牙兵)	4哨	35哨	66哨
속오(束伍)	38哨	-	-
포수(砲手)	80名	-	-
궁시인(弓矢人)	120名	-	-
성정군(城丁軍)	880名	-	-
표하군(標下軍)	1186名	683名	1200名
차비군(差備軍)	584名	-	-
당보군(塘報軍)	-	96名	-
수솔군(隨率軍)	-	225名	90名
치중군(輜重軍)	-	380名	700名

(자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18, 兵考10, 州軍兵條 참조.)

위의 <표 1>에서는 제주지역에 중군(中軍)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군병 수가 다른 전라감영과 병영에 비해 많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제주지역이 비록 전라도에 속하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혹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도 육지의 군병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으므로 전라감영과 병영에 준하는 영(營)으로써 독자적인 방어체제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⁵²⁾

다음 아래의 <표 2>는 제주도와 전라도에 소속된 5개 진영(鎭營)의 군병을 구

52)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본집(한국동서사학회, 2000), 130쪽.

성하여 본 것이다.

<표 2> 제주와 전라도 5개 진영(鎭營)의 군병 구성

지역 \ 군병	마병 (馬兵)	속오 (束伍)	표하군 (標下軍)	당보군 (塘報軍)	수솔군 (隨率軍)
제주(제주목사)	10哨	38哨	1186名	-	-
순천(진영장)	5哨	46哨	188名	184名	895名
운봉(좌영장)	2哨	34哨	287名	120名	492名
전주(중영장)	5哨	46哨	454名	59名	689名
나주(우영장)	5哨	52哨	210名	220名	865名
여산(후영장)	4哨	34哨	317名	117名	629名

(자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18, 兵考10, 州軍兵條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경우 군병 구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마병(馬兵)의 병력이라 할 수 있겠다. 제주지역은 다른 진영과는 달리 당보군과 수솔군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아 비교할 대상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오군의 경우는 38哨⁵³⁾로, 가장 많은 수로 구성된 순천(46哨)·전주(46哨)·나주(52哨)진영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나 운봉(34哨)과 여산(34哨)보다는 많은 군병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장 또는 장관 밑에 소속되어 있던 표하군의 경우도 1186명에 달하는 군병이 배치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제주지역의 경우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항상 방어에 대비해야 했고, 군사력 확보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주지역 지방군을 이루는 군병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병의 경우에도 10哨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진영과는 대부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주지역에 편성된 마병(馬兵)의 비율이 다른 진영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선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목장지대로써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4,000~10,000필 내외의 말이 사육되어 대부분 조정에 공물(貢物)로 진상되고 있었다.⁵⁴⁾ 즉, 조정의 외교·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제주지역의

53) 哨는 군대(軍隊)를 편제하는데 쓰이는 단위로 약 100명을 한 단위(單位)로 하여 1조(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목장은 더욱 확대·강화되어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말이 항상 풍족했고, 친숙하였기 때문에 마병의 양성이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지역의 경우 왜적 등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주변 해안선을 1차 방어선으로 삼아 말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마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증보문헌비고』에 등장하는 함경도와 평안도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함경도와 평안도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마병(馬兵), 별무사(別武士), 친기위(親騎衛) 등 기병(騎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두 지역 역시 북방 이민족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끊임없이 적의 침입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기병(騎兵)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가 주요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숙종 28년(1702) 제주에 부임한 목사 이형상이 여러 고을을 순력하면서 작성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대정조점(大靜操點)」과 「교래대렵(橋來大獵)」 등에서도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나 마병의 훈련과 점검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제주지역 군사제도에서 있어 마병(馬兵)이 주요한 병종(兵種)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2. 제주지역 지방군의 시기별 분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군사면에 있어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변천과정에 따른 제주지역 지방군이 시기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은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처럼 현종 13년(1847)의 제주 군제개혁을 기준으로 삼은 까닭은 당시 이 군제개혁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속오군과 마대가 증설

54) 김동진, 「조선시대 전기-제5절 제주의 마정과 공마」 『제주도지』(제주도, 2006), 397쪽.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종으로서 별아병이 신설되는 등 그 편제와 군역면에서 변화를 수반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은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의식(李宜植)의 건의를 수용·재가(裁可)하여 시행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목사 이의식이 보고한 바를 보건대 이르기를, “본도는 바다에 접한 이역(異域)이므로 그 방비하는 바가 더욱 마땅히 특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대(馬隊) 10초 안에 제주가 6초, 대정이 2초, 정의가 2초이고, 속오(束伍) 30초 안에 제주가 23초, 대정이 2초, 정의가 5초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양읍(兩邑)의 각 초(哨)는 모두 방영(防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 허술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지금부터 각 해당 읍에 획부(劃付)하여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대정 속오는 그 누정(漏丁)을 조사하여 3초를 더 설치하고, 파총(把總)과 초관(哨官)은 전례에 의하여 임명하십시오. 작년 가을에 누정을 조사해 얻은 것이 7,036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1,371명은 양읍 11초에 보충하도록 나누어 주며, 제주 속오에 20초를 더 설치하면 군제가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또 섬사람들은 포 쏘는 솜씨가 가장 정밀합니다. 이들을 뽑아 10초를 정하여 별아병포수(別牙兵砲手)라 이름 짓고, 영장(領將) 1인은 전함조관(前啣朝官) 중에서 임명하여 거느리게 하며, 매 조련에 일체 점검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이외의 남은 수효는 결원이 생길 때에 보충하게 하십시오. 양읍 각 초는 춘추(春秋)로 모아 점고(點考)하되 해당 현에서 시행하게 하고, 마병도시(馬兵都試)는 영(營)에 와서 응시하도록 하십시오. 실로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군제에 관계되는 일이라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⁵⁵⁾

이처럼 『제주계록』의 기사에서는 당시 제주 군병의 편제와 지휘·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제주 군제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제주목사 이의식이 제주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군제상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주 군제개혁이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

55) 『제주계록(濟州啓錄)』 도광 27년(헌종 13년, 1847) 6월 7일, 「即見濟州牧使李宜植所報 卽以爲本島接洋異域其所備虞 尤當自別 以馬隊十哨內 本州六哨 大靜二哨 旌義二哨 束伍三十哨內 本州二十三哨 大靜二哨 旌義五哨 以若零星之兩邑 各哨皆爲管領於防營 則疎漏莫甚 自今劃付各該邑 使之主管 大靜束伍 查其漏丁 加設三哨 把哨依例差定 昨秋漏丁查得 爲七千三十六名 就此一千三百七十一名 充代於兩邑十一哨劃付之 數 本州束伍加設二十哨 則軍制成樣 且島人砲手 最是精放抄定十哨 各以別牙兵砲手 領將一人 以前啣朝官中差定領率 每於操鍊 一體應點 此外餘數待闕填充 兩邑各哨春秋聚點 自該縣設行 馬兵都試來赴營下 案爲方便 而事係軍制 以待處分云矣」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제주지역 군병 편제의 불균등성을 들 수 있겠다. 현종 13년(1847) 이전 제주지역 군병의 편제는 마대 10초와 속오 30초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대의 경우 제주에 6초, 대정과 정의에 각각 2초씩 편제되었고, 속오는 제주에 23초, 대정에 2초, 정의에 5초가 편제되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제주 지방군의 편제와 부족한 군역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대한 지역 방어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종 13년(1847) 당시 제주지역에서 군병을 충원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선조 37년(1604) 제주 정의현의 경우, 젊은 여자들을 징발하여 성정군(城丁軍)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으며⁵⁶⁾, 제주지방 관아에서는 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해군 2년(1610)에 호구와 남정을 다시 조사하여 7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군적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⁵⁷⁾에서도 군사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잘 나타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군제의 지휘·운영상의 폐단을 들 수 있다. 즉, 당시 마대와 속오의 편제에 따른 통제를 모두 방영(防營)에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 삼읍의 거리⁵⁸⁾를 고려해 보면 대정과 정의, 이 양읍(兩邑)의 군제를 모두 방영에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변란이 일어났을 경우 군사를 동원하는 권한이 양읍에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각 읍의 경계를 방어하는데도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이후의 제주지방 병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1854년경에 이르러 작성된 『탐영사례』에서 제주 삼읍의 군역은 총 16,953명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지역 남자인구 38,298명(제주목 23,583명, 대정현 6,921명, 정의현 7,794명)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반 이상이 군역을

56) 『선조실록』 권 174, 선조 37년 5월 25일 을해조.

57)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142쪽.

58) 『제주읍지(濟州邑誌)』 도로조(道路條), 「自官門沿海大路東至旌義界下道衣里八十里西至大靜界頭毛里九十里…」 ‘제주목 문에서 연해의 큰 길을 따라 동쪽으로 정의현 경계(지금의 구좌읍 하도리)까지는 80리이고, 서쪽으로 대정현 경계(지금의 한경면 두모리)까지는 90리이다.’ 즉, 현대의 환산치(1리≒400m)를 적용해 보면 정의현까지는 약 31km, 대정현까지는 35km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현종 13년(1847)에 지방군의 편제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혁하는데 위의 사료에서 언급된 바 있는, 누정(漏丁)의 색출과 더불어 기근, 전염병 등의 자연적 요인과 출륙금지령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증감을 거듭하면서 일어난 제주도 호구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⁵⁹⁾ 즉, 1847년 전 해에 이루어진 7,036명에 달하는 누정의 색출을 통해 결원(缺員)을 충당함으로써 군역 증대와 함께 편제 개편을 의도하였던 것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을 통해서 제주 3읍의 마대와 속오군의 대규모 증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마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10초에서 대정과 정의에 각각 2초씩 더 편성하여 총 4초가 증편되었고, 속오군의 경우는 기존의 30초에 방영 소속의 속오군 20초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편 기존에 대정의 속오군은 2초에 불과하여 1사(司)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누락된 장정들을 조사하게 하였고 이후 대정과 정의에는 각각 5초씩 속오군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방영에 소속된 속오군은 50초, 대정과 정의는 각각 5초로 30초에 달하는 속오군이 추가로 편성되어 기존 30초에서 2배가 증가하여 총 60초로 재정비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제주 군제개혁을 통해 마대와 속오의 증편과 더불어 새로운 병종(兵種)으로써 별아병(別牙兵) 10초가 신설되기까지 하였다. 별아병은 제주 백성 가운데 포(砲) 쏘는 솜씨가 면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아 이들로 중심으로 편제된 병종으로서 『제주계록』에서는 ‘별아병포수(別牙兵砲手)’라 지칭했으며 영장(領將) 1명을 임명하여 거느리게 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제주지역 군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단행된 제주 군제개혁은 군병 편제에 있어서 기존의 군병을 증설하고, 새로운 군병을 신설하여 지역 방어에 군사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군병을 지휘·감독하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지휘체계를 개선하여 방영의 지휘·감독권을 대정과 정의, 양읍에 넘겨주어 독립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는 마대와 속오, 별아병 이외에도 많은 병종(兵種)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제주지방군의 시기별 분포가 어

59)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63쪽.

떠냈는지, 그 실태를 제주에 남아 있는 여러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이전 제주 지방군의 분포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제주지방군의 편제 및 군역의 분포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1780~1782년경에 작성된 『제주읍지(濟州邑誌)』와 1793년경 작성된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그리고 1841~1843년 사이에 작성한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정조년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를 참고할 수 있다. 각각의 문헌사료에 나타나있는 시기별 병종(兵種)의 군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종 13년(1847) 이전 제주삼읍 정병(正兵)의 군역기록⁶⁰⁾

연대 전거 병종	18세기 중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탐라방영총람 (1760~1770)	제주대정정의읍지 (1793)	제주병제봉대총록 (정조년간)	탐라지초본 (1841~1843)
마병(馬兵)	1,410名	1,398名	10哨 1,432名	1,410名
속오(束伍)	4,068名	3,930名	30哨 4,071名	3,930名
아병(牙兵)	532名	528名	4哨 536名	528名

위의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總覽)』 등의 자료에는 제주지역 군병의 편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에 입해야 하는 정병⁶¹⁾으로서 마병, 속오, 아병과 같은 병종(兵種)이 나타나는데 그 편제에 따른 군역(軍額)의 경우 각 시기별로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60) 『탐라방영총람』,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 『제주병제봉대총록』을 참고하여 작성함.

61) 정병(正兵)은 수군과 함께 양인이 지는 대표적인 군역으로서 조선 초기 당시의 병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종이었다. 이후 정병의 편성은 지방군 군역을 늘림으로써 추가로 파악된 군역 부담이 가능한 농민층과 중앙군으로 흡수되지 못한 시위군·영진군·익군 등을 단일 병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종록, 「조선 초기 正兵의 軍役-1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창간호, 고려사학회, 1996, 118쪽.)

그리고 이 밖에도 현종 8년(184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에서도 속오군의 군액은 제주목에는 3,090명, 정의현에는 600명, 대정현에는 240명으로 총 3,930명이 편제되어 있었다. 또한 아병의 경우 4초 532명, 마병의 군액은 제주목에 928명, 대정·정의현 각각 242명으로 총 1,402명이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의 <표 3>의 내용과 대부분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하면,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제주지역의 군제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방어 체제에 변화를 주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일정하게 군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표 3>에서는 아병(牙兵)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아병은 본영(本營) 대장의 난후친병(欄後親兵)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예병(精銳兵)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방어사인 목사가 내근하는 경우에는 영 내에 대기하고 영 외로 출입할 때에는 난후친병(欄後親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또한 『탐라방영총람』과 『탐라록』에는, 아병은 원신역자인 농민들로 구성되었다는 기록⁶³⁾이 나온다. 그런데 당시 아병은 매 5일에 30명씩 윤번입직(輪番入直)하도록 하고 번미(番米)를 받침으로써 번(番)에서 빠지는가 하면, 또 고공(雇工)으로 대립(代立)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⁴⁾ 이로 인해 당시 아병은 방군(防軍), 선격(船格)과 더불어 최고의 고역 중 하나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표 3>의 기록들을 살펴 본 결과, 1847년 이전 제주지역 정병의 군액면에서는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당시 제주지역 군병의 편제와 군액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제주병제봉대총록』의 기록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종 13년(1847)를 전후로 제주지역 사료에 나타나는 제주지역 군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제주지역의 군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 김상욱, 「조선 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19세기 濟州社會 研究』(일지사, 1997), 49~50쪽.

63) 『탐라방영총람』 도훈도소군총조(道訓導所軍總條), 「牙兵五百三十二名元身役」 이원조, 『탐라록』, 「牙兵四哨多農民元」

64) 『제주계록』 동치 7년 6월 26일, 「本牙兵之分四哨輪番入直每五日爲三十名而或例捧番米或代立雇工闕伍居之」

<표 4> 『제주병제봉대총록』에 나타난 제주삼읍의 군제와 군액

분류		편제 내용	군액
정병	속오	• 3部 6司 30哨 1部 - 친총 1명, 친총차비군 4명, 2司로 편성 1司 - 파총 1명, 5哨로 편성 1哨 - 초관 1명, 초군 133명	4,071명
	아병	• 4哨 1哨 - 초관 1명, 초군 133명	536명
	마병	• 2隊 10哨 1隊 - 별장 1명, 5哨로 편성 1哨 - 초관 1명, 초군 142	1,432명
	합계	• 44초	6,039명
잡색병	대장 · 중군 · 현감	• 제주대장 1,918명 / 중군 461명 대정현감 502명 / 정의현감 1,101명 - 집사 13명, 성장 8명, 치총 16명 - 배행군 194명, 수술군 248명, 대기치군 498명, 차비군 575명, 의장군 42명, 성정군 2,057명, 유적군 294명, 성문거교군 37명	3,982명
	9진	• 제주 1,837명 / 대정 314명 / 정의 321명 - 만호 1명, 조방장 8명, 치총 20명, 수술군 82명, 성정군 1,780명, 유적군 581명	2,472명
	합계		6,454명
봉수 · 연대	제주	• 봉수 10處, 연대 18處 - 별장 168명, 봉군 264명, 직군 216명	648명
	대정	• 봉수 5處, 연대 9處 - 별장 84명, 봉군 60명, 직군 108명	252명
	정의	• 봉수 10處, 연대 11處 - 별장 126명, 봉군 120명, 직군 132명	378명
	합계		1,278명
합계		13,771명	

(자료 :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 <奎4485> 참조.)

<표 4>는 『제주병제봉대총록』에 나타난 제주 3읍 군제에 따른 군액을 정리한 것이다. 즉, 현종 3년(1847) 이전 제주 3읍의 군제는 크게 정병(正兵)과 잡색병(雜色兵)으로 구분되었다. 정병⁶⁵⁾은 다시 속오와 아병, 마병으로 구분되며 이들

정병의 규모는 44초에 6,039명에 이른다. 한편 잡색병은 대장(大將)·중군(中軍)·현감(縣監)에 소속된 군병 6,454명과 명월진을 포함한 9진에 편성되어 있던 군병 1,278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총 13,771명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속오와 아병, 마병 이 외에 제주 3읍의 읍성과 9진, 그리고 63처에 달하는 봉수와 연대에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목은 대장과 중군이 소속되었는데 그 군액은 2,379명에 달하고 대정과 정의현의 경우는 1,603명의 군병이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명월진을 제외한 8개 진에는 각각 1인의 조방장을 책임자로 하여, 치총과 성정군 및 유직군의 군병들이 편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명월진에는 종4품의 무관인 만호(萬戶)가 책임자로 임명되어 치총과 성정군 및 유직군 외에도 수솔군이 포함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봉수와 연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옛 군사통신시설이라 할 수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왜적의 침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제주의 경우 봉수와 연대를 바다가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어체제를 갖추었는데 이들 각 봉·연대에 편성된 별장은 6명으로 공통적이나 봉·연군의 수는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현종 3년(1847) 이전의 제주지역 군제는 30초의 속오와 4초의 아병, 그리고 10초의 마병을 기본으로 하고, 그 군제와 군액에 있어서 18세기 중반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도 3읍의 읍성과 9진, 63처에 달하는 봉수와 연대에 상당수의 군병들이 편제되어 있었다. 군병의 총 액수는 군관을 포함하여 약 14,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중 속오와 마대, 성정군 등은 속오군의 성격을 갖는 군병들로서 제주지역 군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달리 원신역을 지는 군역으로는 아병과 방군 및 봉·연군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65) 정병(正兵)은 농민으로 이루어진 양인(良人) 군사를 의미하는데, 번상병(番上兵)과 유방병(留防兵)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번차에 따라 번상 또는 부방(赴防)하고, 평시에는 비번인 상태로 주업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 (장필기, 「17世紀 前半期 東伍軍의 性格과 位相」 『사학연구』제42집, 한국사학회, 1990, 149쪽).

(2)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이후 제주 지방군의 분포

그렇다면 현종 3년(1847) 군제개혁 이후, 각 문헌자료에는 그 군제개혁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핀 제주 군제개혁 내용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다. 즉 제주 지방군의 기본 편제는 속오가 60초(방영 50초, 대정·정의 각각 5초), 마대는 14초(방영 10초, 대정·정의 각각 2초), 별아병이 10초로 새롭게 증설된 바 있었다. 이 외에 군제개혁 이전부터 존재해 온 4초의 아병과 『제주병제봉대총록』의 잡색병에 속하는 군병 및 각 처의 봉·연대에 편성된 군병 또한 존재하였던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우선 현종 3년(1847) 이후 제주의 군제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1854년경에 작성된 『탐영사례』와 『제주사례』, 187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정군군병도안』이 존재한다. 당시 제주지역 군제의 편제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는 『탐영사례』이다. 다음 <표 5>는 『탐영사례』에 수록된 군병의 편제에 따른 군역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 『탐영사례』에 나타난 제주삼읍의 군제와 군역

분류	편제	군총	
정병	속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部 10司 50哨 1部 - 천총 1명, 차비 45명, 2司로 구성 1司 - 파총 1명, 차비 49명, 5哨로 구성 1哨 - 초관 1명, 초군 120명 	6,780명
	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哨 1哨 - 영장(領將) 1명, 서기 1명, 초군 131명 	532명
	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隊 10哨 1隊 - 별장 1명, 5哨 1哨 - 초관 1명, 초군 142명 	1,432명
	별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哨 영장(領將) 1명, 영장차비 49명 1哨 - 초관 1명, 초군 148명 	1,540명
	합계		10,284명

잡색병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將所 - 집사 12명, 배행 73명, 차비 256명, 대기치 511명, 의장군 42명, 유직군 124명, 성정군 1,036명 ◦4城門 - 치총 8명, 훈도 8명, 서기 16명, 차비 88명 	2,174명
	9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鎮 분산 편제 - 조방장 8명, 치총 19명, 서기 108명, 급수군 2명, 성정군 1,833명, 방군 1,425명 ◦明月鎮에만 편제 - 만호 1명, 가솔 31명, 진리 22명, 통인 28명, 사령 26명, 관노비 6명, 지장 1명, 감한 2명, 철장 2명, 목수 1명 	3,589명
	합계		5,763명
봉수 · 연대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烽燧 10處 - 별장 6명, 직군 12명 ◦烟臺 18處 - 별장 6명, 직군 6명 	396명
	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烽燧 5處 - 별장 6명, 직군 12명 ◦烟臺 9處 - 별장 6명, 직군 6명 	198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烽燧 10處 - 별장 6명, 직군 12명 ◦烟臺 11處 - 별장 6명, 직군 6명 	312명
	합계		906명
합 계			16,953명

(자료 : 『탐라영사례(耽羅營事例)』 참조.)

위 <표 5>에서 참조한 『탐라영사례』는 耽羅營, 즉 방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진보(鎭堡)와 봉연의 경우는 3읍 전체를 보여주지만, 속오와 마대 및 읍성에 편성된 군병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⁶⁶⁾ 그러므로 속오와 마대, 아병 및 병아병을 살펴보면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속오·마대·별아병 등 정병의 편성은 제주 군제개혁에서 단행한 대로 각각 50초, 10초, 10초로 편제되었고 군제개혁을 통해 증편된 속오군의 10초와 마대의 4초는 방영 소속이 아니라 대정·정의현에 소속된 군병이었으므로 『탐라영사례』에서 이들의 군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봉·연군에 소속된 군병의 수는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봉·연군의 전체 수는 38처에 달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봉연에 배속된 직군의 군역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나

66)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93쪽.

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잡색병 중 9진에 속하는 군병의 수가 이전 『제주병제봉대총록』에 나타난 기록에서 1,117명이나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9진에 분산 편제되어진 1,425명에 달하는 방군(防軍)의 존재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주병제봉대총록』에서는 방군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대신에 581명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직군(留直軍)이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이후의 기록인 『탐영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방군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이는 1847년 이전의 여러 사료에서 방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1793년에 작성된 『제주대정정의읍지』에서 방군의 군액은 992명이었고 1841~1843년에 이르는 시기에 작성된 『탐라지초본』에서는 1,070명에 이르는 방군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잡색병 내에서 대정·정의 현감 소속 군병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것 또한 양읍으로 지휘·감독권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탐영사례』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사례』에서도 속오군은 50초로 구성되어 그 군액은 6,780명에 달하고 아병의 경우 4초에 524명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마병은 10초에 1,420명이, 별아병은 10초로 구성되어 1,540명에 달하는 군병들이 편제되어 있어 『탐영사례』에 나타난 군병의 군액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표 5>에서 『탐영사례』를 통해 살펴 본 제주 군제개혁 이후 제주지역 군제의 편성은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의 충실한 반영되고 유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나마 당시 대정지역의 군병의 군액에 대해서는 1870년에 작성된 『대정군군병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정군군병도안』에 편제된 군병은 총 1,900명으로, 그 가운데 마대는 좌·우마대로 나뉘어 각각 131명씩 모두 262명이 편성되었고, 속오는 前-左-中-右-後으로 구분되어 총 655명이 5초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성정군 337명과 군수수술 118명, 교직생 26명 등을 포함한 512명의 군병이 편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을 전후하여 제주지역의 군병 편제에 있어서 변화된 내용은 다음 <표 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6>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전후의 군병 편제와 군역의 변화⁶⁷⁾

병종	시기	1847년 제주 군제개혁 이전	1847년 제주 군제개혁 이후
마병 (馬兵)		2대 10초 : 1,432명	2대 10초 : 1,432명 (대정·정의 소속 4초 누락)
속오 (束伍)		3부 6사 30초 : 4,071명	5부 10사 50초 : 6,780명 (대정·정의 소속 10초 누락)
아병 (牙兵)		4초 : 536명	4초 : 532명
별아병 (別牙兵)		無	10초 : 1,540명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으로 인해 마대와 속오군이 각각 4초, 30초가 증설되었으며, 새로운 병종(兵種)으로서 별아병이 창설되기에 이른다. 이는 곧 제주지역의 군사력이 증강됨과 동시에 방어체제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제주 군제개혁을 통해 제주지역의 누정(漏丁)을 색출하여 각 군의 정원(定員)을 보충함으로써 보다 견고하게 지방군을 편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영(防營)에 귀속되어 있던 각 읍의 지휘·감독권을 이양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군사를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변화된 군제는 19세기 후반까지 잘 유지되어 갔으나 광무연간 들어서면서 제주의 군병은 모두 폐지되기에 이른다.

1895년 윤(閏) 5월 7일에는 ‘각 도 외영의 군병들의 해방에 관해 재가하여 반포하게 한다’는 내용이 하달되어 군병이 해방되는 한편, 이틀 뒤인 5월 9일에는 ‘각 처 봉대에 봉·연군을 폐지하는 건을 삼가 올려 아뢰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면 당시 봉·연군 또한 폐지되었을 것이라 보여진다.⁶⁸⁾

67)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 이전의 기록은 정조년간에 작성된 『제주삼읍군제』를 참조하였고 제주 군제개혁 이후의 기록은 1854년경에 작성된 『탐라영사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 표를 작성하였다.

68) 「勅令第111號 各道外營兵丁의 解放에 관한 件」, 개국 504년 윤 5월 7일 ; 「奏本 各處烽臺의 烽燧軍廢止하

또한 두 달 뒤인 7월 15일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비롯한 진영(鎭營), 진보(鎭堡)를 폐지하는 명령이 전국에 하달되어⁶⁹⁾ 대부분의 군병은 모두 혁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1899년에 작성된 『대정군고지』와 『정의군고지』에서 ‘軍兵 無’라고 기록되어진 점으로 보아 제주의 군병 편제가 1899년 이전 시기에 혁파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는 件」, 개국 504년 윤 5월 9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433쪽).

69) 「勅令第140號 各道の 兵營과 水營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 「勅令第141號 各鎭營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 「勅令第142號 各鎭堡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433쪽).

Ⅲ.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실태

1. 『대정군군병도안』의 내용과 특징

도안(都案)은 각종 군사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군안(軍案), 즉 군적(軍籍)을 말하는 것으로,⁷⁰⁾ 군적은 당시 군병(軍兵)들의 소속과 신원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연대기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생생한 구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⁷¹⁾ 즉, 군적 자료를 통해서 군적의 형식과 그에 기록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극히 일부지만 군적이 작성된 시기의 군역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군적은 언제부터 작성되어졌을까. 군적은 고려시대 때부터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²⁾ 고려시대의 군적은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은 특별한 신분층에 속한 사람들의 장부로서 그들의 인적 사항과 지급 받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조선시대의 군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군역은 고려조에 비해 크게 확대 시행되었다.⁷³⁾

이처럼 군적 작성은 군 병력을 구성하는 군역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 병력의 규모를 설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즉, 군역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호적을 바탕으로 그 가운데 군역부와 대상자를 골라 작성된 군적은 병조에서 보관하고 각도의 감영(監營)과 주진(主鎭), 거진(巨鎭) 및 각 진에 1부씩 보내져 이를 기준으로 군역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군적에 수록된 장정의 사망

70) 김동진,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206쪽.

71)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연구』 132호(한국사연구회, 2006), 76쪽.

72) 『고려사』권3, 「세가」 성종 7년 정월조, 「武班年老無子孫 自癸卯年錄軍籍者 皆放還鄉里」 ‘무반으로서 나이가 많고 자손이 없는 사람과 계묘년(高麗 太祖 26년, 943) 이래 군적에 등록된 자들은 모두 향리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고려 태조 말에 이미 군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이현수, 「조선전기 군적 작성의 추이」 『육사 논문집』 Vol.49(육군사관학교, 1995), 62쪽.

에 따른 결원의 정리, 새로운 인원의 보충을 위해 원칙적으로 군적은 6년마다 다시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⁷⁴⁾ 지방에서는 해당 절도사(節度使)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제주의 경우는 절제사(節制使) 즉, 제주목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다.⁷⁵⁾

지금까지 알려진 군적 자료로는 선조 29년(1596) 평안도지방의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과 『진관관병용모책(鎭管官兵容貌冊)』, 정조 22년(1798) 경상도 하동지방의 『하동부속오군병무오식개도안(河東府東伍軍兵戊午式改都案)』이 있다. 또한 육군박물관에 122매의 군적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작성연대가 불분명하나 충청도 지방의 군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17세기 충청도 지방의 병적기록부인 속오군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모두 16세기 속오군의 성립시기와 맞물리며 작성된 군적으로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속오군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군적이 발견되어 영인된 바 있다.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東伍軍籍簿)』(이하 ‘군적부’)와 『대정군군병도안(大靜郡軍兵都案)』(이하 ‘군병도안’)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숙종 11년(1685)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지역 속오군의 명부인 군적으로서 속오군의 직역·이름·연령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신장·기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⁷⁶⁾ 후자의 경우는 1870년의 군적자료로서,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주요 병종(兵種)이었던 마대, 속오군 등에 대한 편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군병도안’은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호적중초 자료와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분석하기에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III장에서는 ‘군병도안’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들의 각 병종별 편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군병도안’⁷⁷⁾은 1책 65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 규격은 가로 26.5cm×세로

74) 강석화, 「조선후기 군역제도의 변화(상)」 『군사』 21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114쪽.

75) 『경국대전(經國大典)』권 4, 兵典 成籍條.

76)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연구』 132호(한국사연구회, 2006), 76~77쪽.

77) 대정군은 본래 대정현(大靜縣)으로 태종 16년(1416년)에 정의현과 더불어 제주목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이 후로 전라도관찰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목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다. 그 후 읍명의 명칭은 고종 원년(1864)에 대정군으로 승격되었다가 고종 17년(1880)에 다시 현으로 환원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군병도안’

35.0cm이다. 군병도안 앞 표지 전면에는 ‘同治九年正月 日軍兵都案 / 己巳十二月 廿八日 到付 / 大靜郡’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후면에는 ‘行郡守成’이라 하여 바로 옆에 ‘使’라 쓰고 수결(手決)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표지에 나와 있듯이 이 ‘군병도안’은 동치 9년 즉, 고종 7년(1870) 정월(正月)을 기준하여 그 전 해인 고종 6년(1869)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대정군수였던 성교수(成喬修)가 대정군 군병의 전체적인 명단을 작성하여 제주목사에 올린 것이었다.⁷⁸⁾ 본 ‘군병도안’은 직임, 특기, 직역, 성명, 나이, 부(父)의 성명, 거주지명 순으로 한 면당 16명의 인원을 기재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병도안’ 내 군병의 작성 순서는 대정군의 읍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 주위를 수비하던 성정군(城丁軍), 다음으로 좌마대(左馬隊), 우마대(右馬隊), 속오군(束伍軍), 군수수술질(郡守隨率秩), 차귀진·모슬진 방군(防軍) 및 파수(把守), 봉·연군(烽煙軍) 및 파수(把守), 교직생질(校直生秩)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즉, ‘군병도안’에 수록된 군병들은 다음 <표 7>과 같이 크게 성정군, 마대, 속오, 군수수술, 차귀진과 모슬진의 방군 및 파수, 각 봉·연대 및 파수, 그리고 교직생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표 7> 『대정군군병도안』의 군병 편제

(단위 : 명)

병종	성정군	마대	속오	군수수술	차귀진 방군	모슬진 방군	봉·연 군	교직생	합계
군액	337	262	655	118	128	116	218	66	1900

‘군병도안’에 확인된 군액은 총 1,900명에 달하며 본 논문에서는 군병 가운데 인원의 연령이나 직역 등의 여러 정보가 하나라도 확인이 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시켰다.

의 경우는 ‘군병도안’이 작성된 당시의 읍명(邑名)이 대정군(大靜郡)이라 불리웠기 때문에, ‘대정군군병도안’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김동진,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205~206쪽).

78) 김동진, 앞의 논문, 208쪽.

다음으로 ‘군병도안’의 기재양식을 살펴보면 다음의 예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정군군병도안』의 기재양식

第二塚長	射	業武	金最弘	年參拾陸	父應祿	住河源
편성 및 직임	특기	직역	성명	연령	父성명	거주지
(1)	(2)	(3)	(4)	(5)	(6)	(7)

(1)은 편성 및 직임으로 군병의 편제에 따른 각 해당 군병의 지위 및 역할을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2)와 (3)은 각 편제된 군병이 지닌 무예의 특기와 직역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특기의 종류로는 사(射)·환도(還刀)·장(杖)·창(槍) 등이 존재하며, 직역으로는 ‘교생(校生)’과 ‘업무(業武)’ 이 두 가지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8> 『대정군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특기와 직역의 분포

(단위 : 명)

편제	특기					직역			합계
	사	환도	장	창	미기재	교생	업무	미기재	
성정군	83	214	25	8	7	251	86	0	337
마대	206	54	0	0	2	0	206	56	262
속오군	3	8	0	0	644	0	3	652	655
군수수술	18	86	0	0	14	0	18	100	118
방군	5	123	0	0	116	0	4	240	244
봉·연군	121	35	0	0	62	0	121	97	218
교직생	0	0	0	0	66	26	0	40	66
합 계	436	520	25	8	911	277	438	1,185	1,900

<표 8>를 통해 각 병종별 편제에 있어 그 직역과 특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마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의 특기를 지닌 군병이 206명으로 다른 특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환도’의 특기를 지닌 군병은 56명으로 확인되었

다. 이들 마대에 편제된 군병들의 직역은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방군과 군수수술의 경우 ‘환도’를 특기로 하는 군병과 직역이 기재되지 않은 군병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오군과 교직생의 경우는 특기와 직역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이하 게도 ‘교생’의 직역을 지닌 군병들은 모두 성정군과 교직생에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정군의 경우 비록 그 수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특기와 직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성정군에 편제된 ‘업무’와 ‘교생’ 직역을 지닌 자들은 대부분 ‘사’ 또는 ‘환도’의 특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신분적으로 양반 혹은 중인층에 해당하는 자들로 활과 칼을 다루는데 비교적 능숙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성정군에 편성하여 지역 방어에 주력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다른 병종에 비해 고역(苦役)으로 인식되는 봉·연군에 편성된 군병들의 직역이 신분상 중인층으로 인식되는 ‘업무’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군병도안’ 내에 군병들의 직역이 ‘업무’와 ‘교생’으로만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직역의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업무’는 양반자지(兩班子枝)로서 무(武)를 업(業)하는 자의 역명(役名)이었는데, 이렇듯 양반직역이던 업무는 숙종 22년에 서얼의 문무지칭(文武之稱)으로 확정, 시행되어 서얼직역화함으로써 그들의 지위가 저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면역의 특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그리고 ‘교생’은 향교의 생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부터 평민 자제들이 군역 도피를 목적으로 향교 출입이 잦아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들의 향교 출입을 기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조정에서는 군인으로 충당할 양인을 확보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교의 교생

79) 조선시대 도검류의 대표는 환도(還刀)였는데 서울에서 제조된 환도가 양반 귀족들의 의장요이라면, 지방에서 제조된 환도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용 무기였다. 즉, 각 병사들이 휴대한 기본적인 주전투무기 중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6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2, 67~68쪽).

80) 이준구, 「朝鮮後期の <業儒·業武>와 그 地位」 『진단학보』 60권(진단학회, 1985), 44쪽.

중 성적이 불량한 자를 그 충원대상으로 삼아, 교생에게 고강(考講)을 실시하여 떨어진 자들로 하여금 군역으로 충당하고자 했다.⁸¹⁾

이처럼 ‘업무’와 ‘교생’과 같은 직역의 경우 양인을 비롯하여 하층민의 피역(避役)과 지위상승(地位上昇)을 위한 모칭·모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군병도안’ 내에서 대부분의 직역이 ‘업무’와 ‘교생’으로만 파악된 이유 또한 군병들 대다수가 군역에 충당되지 않기 위해 면역(免役)의 특권이 주어졌던 ‘업무’ 또는 ‘교생’의 직역을 모칭·모록한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러한 업무, 교생 직역 외에도 ‘군병도안’ 내에 ‘노(奴)’의 신분이 함께 기재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표 9> 『대정군군병도안』에 ‘노(奴)’의 신분으로 기재된 사례

소속	지역	성명	나이	父성명	특기	직임
교직생질	보성	奴옥영	25	봉득	-	객사직(客舍直)
"	동성	奴진성옥	39	상록	-	육고자(肉庫子)
군수수술질	보성	奴서득	43	춘련	환도	금창환도(及唱環刀)
"	"	奴영민	19	종일	환도	방자환도(房子環刀)
"	동성	奴광검	39	완득	환도	보진환도(補陳環刀)
"	보성	奴하농	38	봉득	환도	-
"	"	奴한념	21	봉득	환도	-
"	동성	奴순행	34	양옥	환도	-
"	"	奴수길	42	제원	환도	-
"	"	奴한손	19	명록	환도	-
"	"	奴용권	28	순록	환도	-
"	보성	奴치인	31	중록	환도	-
"	동성	奴백성	28	효득	환도	구촉환도(驅促環刀)
"	"	奴천수	43	부태	환도	우구배환도(雨具陪環刀)
"	"	奴시인	41	상원	환도	재지환도(載持環刀)
"	"	奴시준	25	상원	환도	화병환도(火兵環刀)
"	"	奴시홍	17	상원	환도	재지환도(載持環刀)

81)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제33호(고문서학회, 2008), 288~289쪽.

"	"	奴현충	59	춘민	환도	위동배환도(衛東陪環刀)
속오군	감산	奴금동	18	재성	-	속오중초 1기총 1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	奴금석	20	재성	-	속오중초 3기총 1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창천	奴수석	19	고완	-	속오우사 화병(火兵)
"	상예	奴순석	40	영호	-	속오좌초 화병(火兵)
"	하예	奴신무	46	성복	-	속오좌초 3기총 1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감산	奴영순	18	영운	-	속오중초 3기총 2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창천	奴영석	39	동	-	속오중초 1기총 2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상예	奴홍남	22	광복	-	속오좌초 1기총 2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	奴금동	36	원길	-	속오좌초 2기총 1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하예	奴홍산	23	동	-	속오좌초 3기총 2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창천	奴한철	40	영빈	-	속오중초 화병(火兵)
"	회수	奴순재	28	종대	-	속오전초 화병(火兵)
우마대	도원	奴순철	40	동	환도	3기총 3대장 第十二 화병(火兵)
"		奴부대	58	동	"	2기총 3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창천	奴금철	20	순명	"	3기총 1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감산	奴충현	20	동	"	3기총 3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도원	奴철복	33	동	"	1기총 3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	창천	奴영철	25	순명	"	화병(火兵)
좌마대	"	奴차량	29	신국	"	3기총 3대장 第十一 화병(火兵)
합 계		총37명				

<표 9>는 ‘군병도안’에서 ‘노(奴)’ 신분을 가지고 등재된 군병들을 정리한 것이다. ‘노(奴)’의 신분이 기록된 군병은 전체 1,900명의 군병 중 37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이 마대와 속오 및 군수수술에 편성된 ‘화병(火兵)’의 직임을 지녔다. 화병은 오늘날의 취사병을 뜻하는 것으로, 가장 작은 편제 단위인 대(隊)의 가장 말단에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었다. 즉, 화병의 직임이 일반 군병에 비해 고역이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가장 하층에 존재하는 계층의 군병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군적부’에서도 이러한 화병이 등장하는데 이들 화병의 경우 일반 군병보다 신체조건뿐만 아니라 신분조건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⁸²⁾ 즉 16세기 말에도 화병은 연령·신장·근력 모든 점에서 일반 군병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병학지남』⁸³⁾에서 규정한 것처럼, 대오를 편성함에 있어 가장 마지막 11번째 군병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녹록하여 남의 부하됨을 달게 여기는 자’로써 ‘화병’으로 충정하는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화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奴)’의 신분을 지녔던 군병들이 수행한 여타의 직임 또한 일반 군병과는 신분적으로 구별될 여지가 크다. 화병 이외에 ‘노(奴)’ 신분의 군병들이 맡았던 직임으로는 군수수술의 급창(及唱), 방자(房子), 보진(補陳), 우구배(雨具陪) 등과 교직생의 육고자(肉庫子), 객사직(客舍直)이 있다.

급창(及唱)은 조선 시대에, 군아(軍衙)에 속하여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내종이었고 방자(房子) 또한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내종을 이르는 말로서 이들 또한 화병과 같이 신분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계층이 맡았던 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4)는 해당 군병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고, (5)는 해당 군병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1,900명 중 단 6명의 연령만이 그 기록이 누락되었을 뿐, 대부분 해당 군병들의 연령은 16~60세 사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군병 가운데 30대가 506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459명, 20대가 456명의 순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6)은 해당 군병의 아버지의 성명을 기재성명을 기재성여기서 특이할성명점은 군병도안에 당 군병에 당 군병에 당 들 중 26명의 부(父) 성명 모두 똑같이 ‘동(東)’으로 기재되어 있기재성또한 <표 당>에서도 기재군병바모두같이중 2626명의 부(父) 가운데 그 당 인 아들 중 6명, 약623%에 해당하는 자들이 ‘노(奴)’의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도안’ 내에서 그들의 직임은 화병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건대, ‘군병도안’에 편제된 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 신분상

82)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 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102쪽.

83) 『병학지남(兵學指南)』 권2, 영진정구(營陣正設) 편병제1(扁兵第一), 「庸碌甘爲人下者一名爲第十一充火兵」

대부분 하위 계층에 해당하여, 조선후기 ‘군병도안’을 작성할 당시 노(奴)와 같은 하층민에 대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父에 대한 정보가 없을 시에는 대부분 ‘동(東)’이라고 일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7)은 해당 군병이 거주하는 리명(里名)을 각각 기록해 두고 있다.⁸⁴⁾ ‘군병도안’에 편제된 1,900명의 군병들은 30개의 동리에 나뉘어 거주했고, 토평(土坪)의 1명에서 일과(日果)의 205명까지 거주지별로 군병의 수에서 큰 편차를 보여준다. 또한 마대(馬隊)의 편제에 있어서 거주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좌마대의 경우는 대부분 좌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군병을 편제했고 우마대의 경우는 그 반대로 군병을 편제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군병도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군적 작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군병도안’의 기재 양식에 따른 군병들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병도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편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에 조선후기의 여러 문헌사료에 나타나는 각 병종별 군액의 변화 또는 각 병종의 특징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2.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편성

(1) 성정군(城丁軍)

성정군은 성 안을 수비하던 군사를 지칭하는데, 조선시대 성정군은 제주지역 군제에 있어서 주요한 병종(兵種)으로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헌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정군의 군액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면 우선, 1702년에 작성된 『탐라순력도』의 성정군 군

84) · 우면(右面) : 갑산(57명), 광청(30명), 덕수(45명), 도원(103명), 동성(173명), 무릉(22명), 보성(61명), 사계(87명), 상모(96명), 신평(28명), 영락(16명), 인향(2명), 일과(205명), 중모(49명), 통천(32명), 하모(133명), 화순(58명) - 총 17개 리
· 좌면(左面) : 강정(94명), 대포(76명), 도순(49명), 상예(60명), 색달(39명), 월평(10명), 중문(83명), 창천(74명), 하예(118명), 하원(66명), 회수(27명) - 총 11개 리
· 기 타 : 양곡(6명), 토평(1명) - 총 2개 리

액(224명)을 제외하고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 즉, 1870년대 이르기까지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 『대정군군병도안』에 나타난 성정군의 군액은 337명~379명으로 거의 비슷한 3기제되어 있다.

<표 10> 『대정군군병도안』에 기재된 성정군의 편제

방위	성정군 편제			
	구분	대오의 편성	합계	
북문 (北門)	감괘 (坎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旗手) : 1명 ◦ 일격대(一擊臺) : 2명 ◦ 제1垛~제19垛 : 37명* 	40명	* 각垛는 타장 포함 2인으로 구성, 단 제19垛는 垛長 1인으로만 구성.
	간괘 (艮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旗手) : 1명 ◦ 치총(雉摠) : 1명 ◦ 성장(城將) : 1명 ◦ 제20垛~제37垛 : 36명 ◦ 솔군(率軍) : 5명* 	44명	* 솔군은 각기수, 서기, 취수 등으로 구성.
동문 (東門)	진괘 (震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旗手) : 1명 ◦ 치총(雉摠) : 1명 ◦ 성장(城將) : 4명 ◦ 이격대(二擊臺) : 1명 ◦ 제38垛~제71垛 : 68명 ◦ 솔군(率軍) : 16명* 	91명	* 솔군은 서기, 기수, 금탁지, 문직, 화포수 등으로 구성.
남문 (南門)	이괘 (離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旗手) : 1명 ◦ 치총(雉摠) : 1명 ◦ 이격대(二擊臺) : 1명 ◦ 제72垛~제105垛 : 69명* ◦ 솔군(率軍) : 9명* 	8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3垛는 고지 1인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 솔군은 남문장, 서기, 기수, 취수 등으로 구성.
서문 (西門)	태괘 (兌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旗手) : 1명 ◦ 치총(雉摠) : 1명 ◦ 성장(城將) : 3명 ◦ 오격대(五擊臺) : 1명 ◦ 제106垛~제135垛 : 60명 ◦ 솔군(率軍) : 15명* 	81명	* 솔군은 서기, 기수, 금탁지, 각기수, 훈도 등으로 구성.
합계			337명	

위의 <표 10>은 '군병도안'에 기재되어 있는 성정군의 편제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성정군은 북문 84명, 동문 91명, 남문 81명, 서문 81명으로 모두 337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팔괘의 감괘(坎卦)·진괘(震卦)·이괘(離卦)·태괘(兌卦)를 나타내는 기수를 선두로 북·동·남·서문 순으로 대오를 편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각 타(堞)⁸⁵는 타장(堞長) 1명과 타장을 보좌하는 군인 1명, 즉 2인 1조를 이루고 각 성문에는 문루(門樓)를 세워 위엄을 갖추고 성벽에는 요소마다 여장(女牆)을 위시하여 치(雉) 등을 배치하고 이를 지휘하는 치총(雉總)을 각 1명씩 두었다. 또한 적을 공격하기에 편리하도록 성 위에 격대(擊臺)를 높이 쌓아 만들었으며, 술군(率軍)으로서 각기수(角旗手)·서기(書記)·고수(鼓手)·취수(吹手) 등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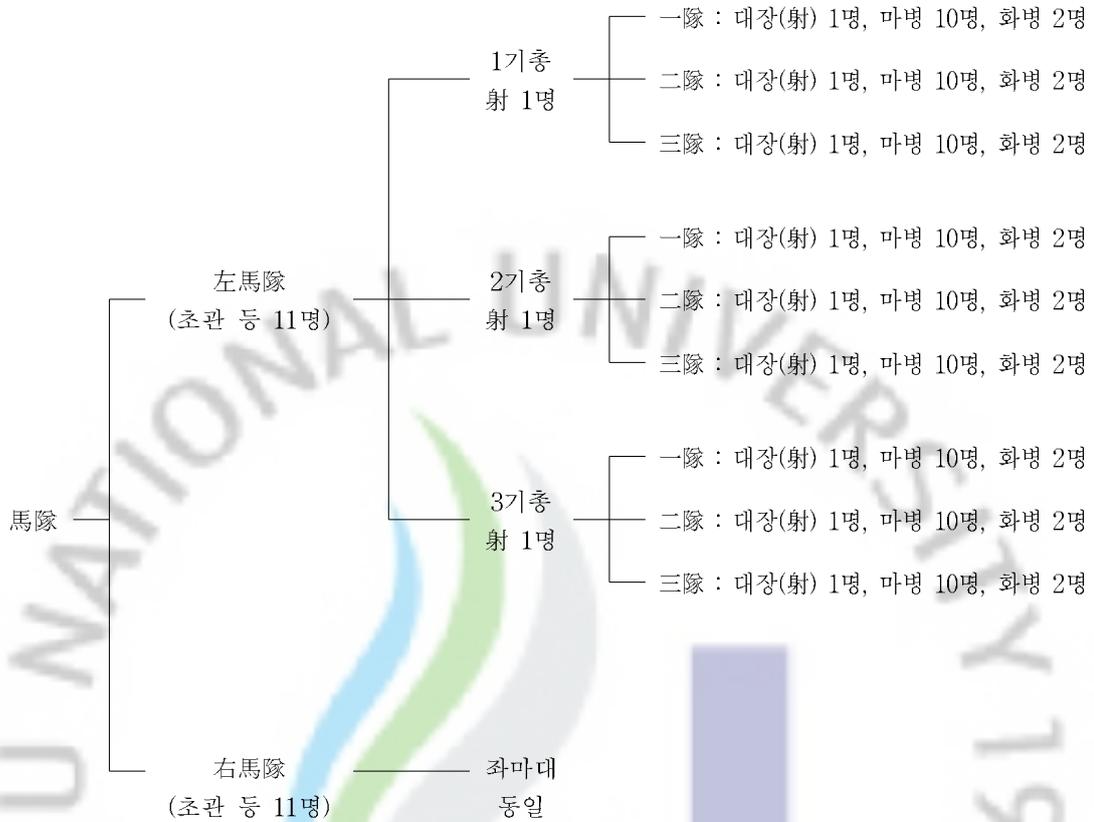
(2) 마대(馬隊)

마대는 제주지역 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병(騎兵)으로서 현종 13년(1847)에 제주 군제개혁이 시행되면서 본래 10초였던 마대는 대정과 정외 양읍에 각각 2초씩 증설된 바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각 문헌사료를 살펴보면, 1780~1782년에 작성된 『제주읍지』에는 좌마대 1초 군사 132명으로 구성되었고, 우마대 역시 1초 132명으로 모두 264명으로 편성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1841~1843년에 작성된 『탐라지초본』에서도 또한 대정 소속의 마병(馬兵)이 26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마대의 편성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다음의 <그림 1>와 같다.

85) 타는 성가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게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이른다. (이원진 씀·김찬흡 외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59쪽).

<그림 1> 『대정군군병도안』의 마대 편성⁸⁶⁾



위의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대의 편성은 좌마대와 우마대로 편성하고 각 마대에는 초관(哨官)·서기(書記)·인기수(認旗手) 등과 수종(隨從) 2명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 대(隊)는 대장 1명, 마병 10명, 화병 2명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좌마대의 구성은 1대에 13명씩 9대 117명(마병 99명, 화병 18명), 기총 3명, 초관 등 11명을 포함하면 131명이 된다. 따라서 ‘군병도안’ 내에서의 마대의 군사는 좌·우마대를 합하면 총 262명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속오군(束伍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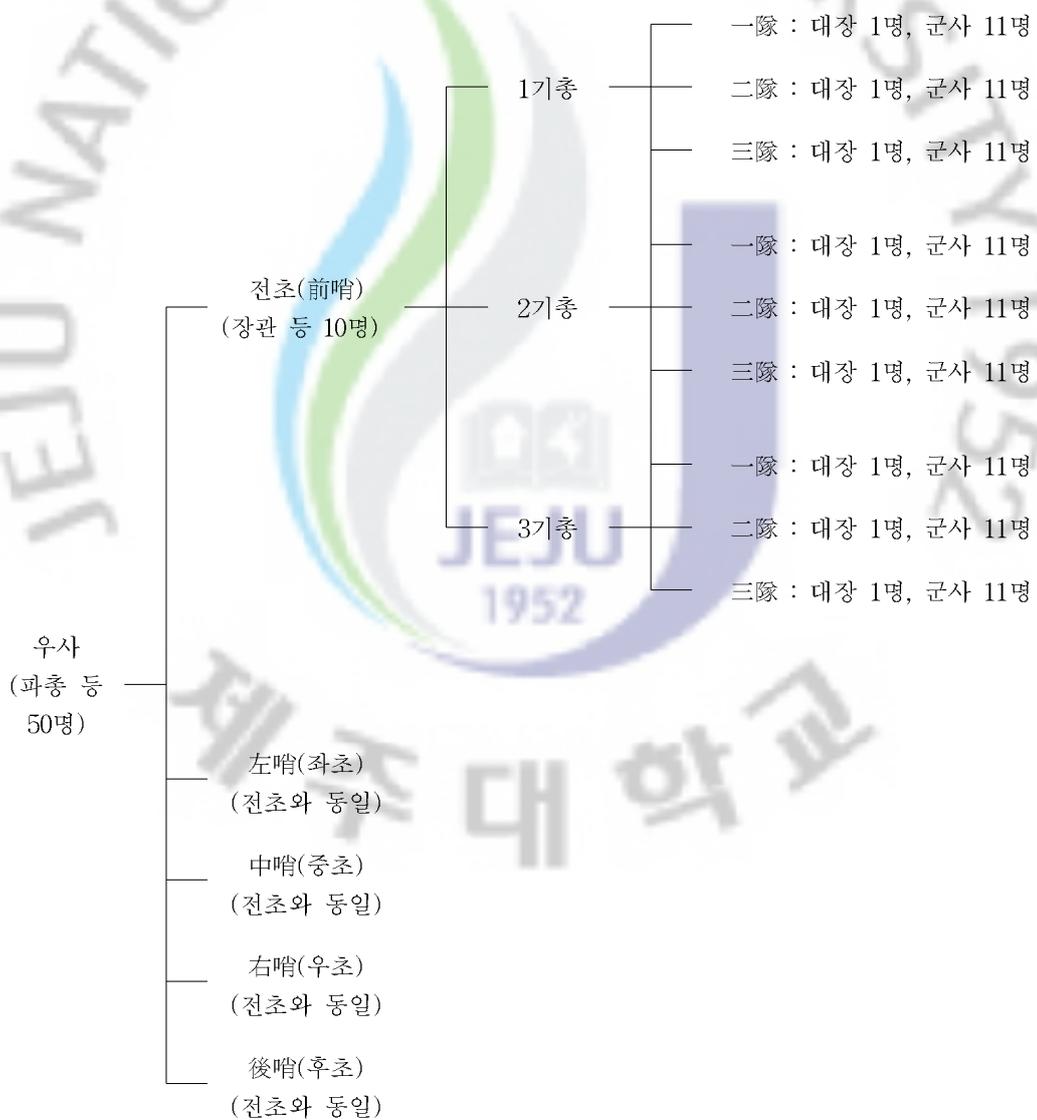
조선시대 임진왜란 발발 이후 군사·제도적으로 변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86) 김동진,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束伍軍籍簿』(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21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속오군이 새롭게 성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이미 II장에서 속오군의 성립에 따른 변화의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속오군이 성립될 당시에는 임진왜란 등 전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직으로서 성립되었으나, 임진왜란이 수습된 상황에서도 속오군은 점진적으로 지방군의 근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음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제주 대정군의 속오군은 『제주읍지』에 속오 2초 240명,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속오군 240명, 『탐라지초본』에 속오군 240명으로 변동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대정군군병도안』의 속오군 편성⁸⁷⁾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속오군의 1哨를 구성하는 군사는 『탐라지』를 제외하면, 모두 120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속오초의 증설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헌종 13년(1847)에 제주 군제개혁을 통해 속오군은 방영에는 50초가 편성되었고 대정과 정의 양읍에는 각각 5초씩 증설하여 완전한 속오군의 편제에 이르렀다. 속오군의 편제는 속오법에 따라 오(伍)는 5명으로 1대(隊)는 2오 10명, 대장 1명, 화병 1명으로 총 12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1기(旗)는 3대 36명, 기총 1명으로 총 37명으로 편제되었고, 1초(哨)는 3기가 모였으므로 11명, 초관 1명, 차비군 9명 총 121명으로 편제되었다. 마지막으로 1사(司)는 전·좌·중·우·후 5초에 605명과 파총 1명, 차비군 49명으로 총 655명의 속오군이 편제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 봉·연군(烽·烟軍) 및 기타

봉수와 연대는 높은 산이나 해안 구릉에 설치하여 불이나 연기를 피워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체제로서 잦은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제주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주지역 해안 방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면 제주에는 25개소의 봉수와 38개소의 연대로 늘어났다.

대정현에 소속된 봉수로는 굴산봉(掘山烽), 이두봉(伊頭烽), 모슬봉(摹瑟烽), 저별봉(貯別烽), 당산봉(堂山烽)으로 각각 별장(別將) 6명, 오장(伍長) 1명, 군(軍) 5명, 보(保) 6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총 5개 처에 90명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대의 경우는 변수연(邊水烟), 대포연(大浦烟), 당포연(唐浦烟), 산방연(山房烟), 무수연(無水烟), 서림연(西林烟), 우두연(牛頭烟)이 대정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연대에는 별장 6명, 오장 1명, 군 5명 총 12명이 각각 7처에 총 8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봉수군은 밤낮으로 망을 보고 봉수대에 불을 올리는 일을 직접 담당했고, 오장은 봉수군과 함께 지내면서 봉수군을 감시하며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⁸⁷⁾

87) 김동진,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21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그리고 대정현에는 5개 처에 파수(把守)가 존재했는데, 동면(東面), 성천(星川), 중면(中面), 범천(犯川), 서림(西林)에 해당하는 지역에 8~10명 정도가 소속되어 총 44명의 파수가 '군병도안' 상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수수솔(郡守隨率)은 당시 대정군수 휘하의 군인들로서 훈도(訓導), 뇌자(牢子), 급창(及唱) 등 118명에 이르는 군병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생(校生), 습마(習馬) 등을 포함한 66명의 교직생(校直生)이 '군병도안'에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차귀·모슬진(遮歸·募瑟鎭) 소속의 방군(防軍)과 파수가 존재하였는데, 차귀진방군의 경우 치총(雉摠) 2명, 훈도(訓導) 2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이 기재되어 있고 모슬진방군의 경우 치총(雉摠) 2명, 훈도(訓導) 1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파수의 경우 두 진에 각각 47명씩 편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8) 최형국, 「전통시대 최고의 통신망, 봉수」 『조선무사』(인물과 사상사, 2009), 55쪽.

IV. 『호적중초』의 군병 직역과 『대정군군병도안』

1. 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의 직역 실태

조선시대는 흔히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민(常民), 노비(奴婢) 이 네 계층으로 구성된 신분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사회였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신분층에 소속되어 양반층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향유했던 반면에 가장 하위의 노비층은 자신들의 무겁고 천한 역(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지배세력과 갈등을 빚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차별적인 신분구조는 국가가 백성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신분의 구분을 더욱더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호적의 작성이었다.

조선시대 호적 작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에서 국역(國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⁸⁹⁾ 이렇듯 국가가 재정의 확보 또는 군역의 부담 등을 위해 매 3년마다 시행된 호적(戶籍)의 작성은 궁핍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빈곤하게 만들었고 국가에 부담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신분을 모칭(冒稱)·모록(冒錄)하는 등 신분제의 폐단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호적자료가 더욱 중요시되는 까닭은 바로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가문이나 마을, 나아가 군현별 주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서 향촌사회의 신분 구조, 호구의 구성 및 신분계층의 변동, 가족구성, 혼인관계 등 향촌사회의 제반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⁹⁰⁾

이러한 호적중초의 대부분은 제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8~19세기 걸쳐 약 100여 년 간 정기적으로 작성되어져 그 식년별 연속성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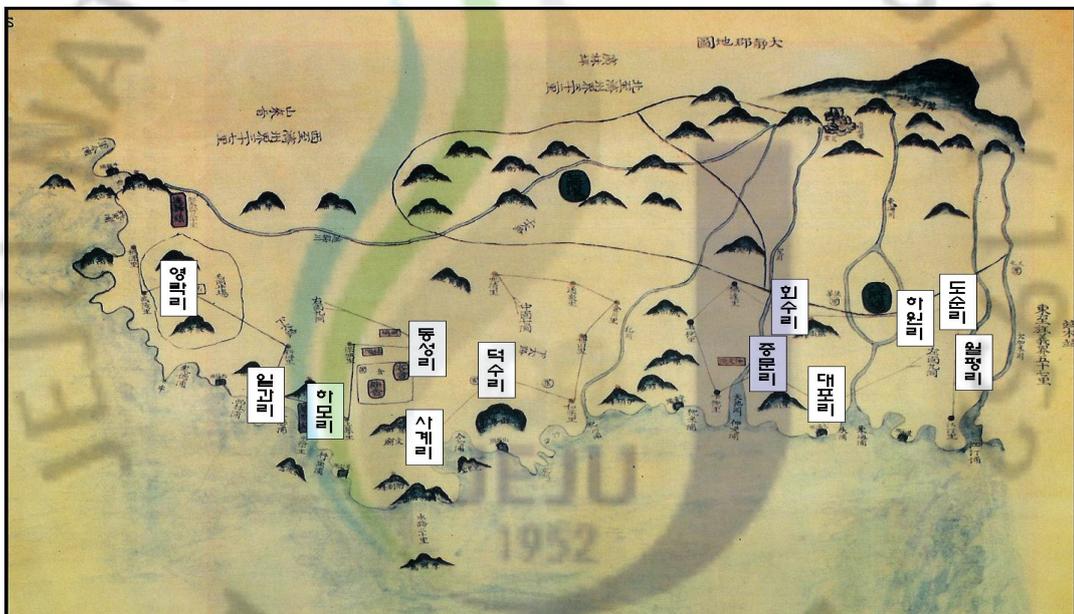
89) 김동진, 「인구와 호적」 『지방사 연구 입문』(역사문화학회, 2008), 203쪽.

90)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제20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18쪽.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호주와 그의 사조(四祖)에 이르는 구성원의 직역과 가족관계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1870년 ‘군병도안’에 기재된 군병의 성명, 나이, 직역, 거주지 등의 단서를 토대로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 자료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에 동시 기재된 군병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군병들의 병종과 직임에 따라 그 해당 마을의 호적중초에서는 어떠한 직역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림 3> 1872년 『대정군지도』에 나타난 12개 마을 분포



(참조 : 1872년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 참조, 주요 부분은 필자가 수정·강조함.)

이를 위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제주 대정현(大靜縣) 지역이었던 대포리, 덕수리, 도순리, 동성리, 사계리, 영락리, 월평리, 일과리, 중문리, 하모리, 하원리, 회수리 총 12개 마을에 남아 있는 ‘호적중초’ 자료와 더불어 ‘군병도안’ 자료에 의거하여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11> 1870년 대정현 12개 리 『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 직역 실태⁹¹⁾

리(里) 직역(職役)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
가솔(假率)	38	13	18	23	34	10	4	32	43	38	23	6	282	34.5
군기감(軍器監)	1	1	1							1	1		5	0.6
기수(旗手)				3	1	1		2				1	8	1.0
기패(旗牌)						1							1	0.1
모방군(募防軍)		3		5	12	1		2	2	10			35	4.3
목가솔(牧假率)		1				1							2	0.2
목기패(牧旗牌)		3		5		4		1		1		1	15	1.8
방군(防軍)								12					12	1.5
별장(別將)					1	1							2	0.2
부사과(副司果)									1				1	0.1
사과(司果)	4	2	2	2						1			11	1.3
성장(城將)	13	9	6	5	12	3	2	13	9	9	6	1	88	10.9
아병(牙兵)		3	1	2		1		1					8	1.0
영가솔(營假率)		3	4	11		2		2				2	24	2.9
영기패(營旗牌)		6	2	3		2		1		5	3	2	24	2.9
장관(將官)	8	4	3	3	4			3	3	1	5	3	37	4.6
조방장(助防將)			1	1						1			3	0.4
직군(直軍)	1			7									8	1.0
진무(鎭撫)	6		5	12	2			13	6	6	4	1	55	6.7
차방군(遮防軍)				1		1		9					11	1.3
천총(千總)	15	14	8	17	15	5	3	2	7	7	3		96	11.7
출신(出身)		1			1					3			5	0.6
파총(把總)	11	10	4	6	7	2	4	13	8	7	6	3	81	9.9
평역군(平役軍)					4								4	0.5
합계	97	73	55	106	93	35	13	106	79	90	51	20	818	100%

91) *로 표시된 리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호적중초’ 중 1870년 식년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전 식년인 1867년 호적중초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11>은 1870년 제주 대정현 12개 리(里)의 ‘호적중초’상에 기재되어 있는 군병 직역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가솔(假率)에서 평역군(平役軍)에 이르기까지 총 24개 군병 직역을 지닌 818명의 주민들이 ‘호적중초’상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솔 직역을 지닌 자가 282명, 약 34.5%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천총, 성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 편제에 있어서 <표 11>에 나타난 여러 군병 직역의 경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당시 중문리·대포리·하모리 등 주로 해안가에 형성된 마을에서 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솔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솔은 함경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변방지역에 설치된 특수 군직으로서 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변방지역의 군비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⁹²⁾ 제주지역의 가솔은 『제주대정정의읍지』에 따르면 제주목사 소속으로는 90인, 제주관관 소속으로는 34인 총 124인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고 『탐라지초본』 군역조에서도 108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솔은 군관으로서 직접 군역에 충정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즉, 가솔의 성격은 편오의 군사가 아니라 일정한 현물 및 현금을 납부하고 군역에서 제외되는 존재였다고 하겠다.⁹³⁾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적인 우위를 지니기 위해 하층민의 경우 ‘호적중초’ 상에서 모록·모칭하는 방법을 통해 ‘가솔’로의 신분변동을 꾀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천총과 성장의 경우도 당시 제주지역 지방군에 편제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천총의 경우 제주지역 속오군 1부의 총 책임자였고, 성장은 각 읍성에서 성을 수비하는 성정군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순리·동성리·하모리에서만 확인된 ‘조방장(助防將)’은 제주진관 소속 9개 방호소 가운데 명월방호소를 제외한 방호소의 책임자로 각 방호소에 성을 쌓아 방어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과(司果)·부사과(副司果)와 같은 관품직역 또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품 취득자의 경우 모두 중앙의 실직(實職)을 역임했다기보다는 제주

92) 정수환,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 23집(제주학회, 2003), 195쪽.

93) 정수환, 앞의 논문, 237쪽.

자제(濟州子弟) 혹은 대가(代加), 납속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대부분 산직(散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⁹⁴⁾

이처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포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 취락을 형성하거나, 중산간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빈번하게 침입해 오는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각 마을에서는 진성을 쌓거나, 해안가 또는 높은 산 주변에 연대와 봉수를 설치하여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방어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진 상황에서 ‘호적중초’에 기재된 주민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군역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계층으로서 그와 관련한 직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솔·아병과 같은 특수한 군병 직역이나 당시 제주지역의 가장 많은 군역을 차지하고 있던 속오군에 소속된 군관직으로서 천총·과총 등이 대다수 등장하고 있는 등 대정현 각 마을별 호적중초를 통해 이러한 군병 직역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2.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의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1870년 대정현 군병의 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군병도안’ 자료와 대정현 호적중초 가운데 앞서 언급한 12개 마을의 ‘호적중초’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자료에 동시 기재된 군병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12개 마을 중 1870년 호적중초가 현존하지 않는 대포리, 월평리, 중문리의 경우는 그 전 식년인 1867년 호적중초를 참고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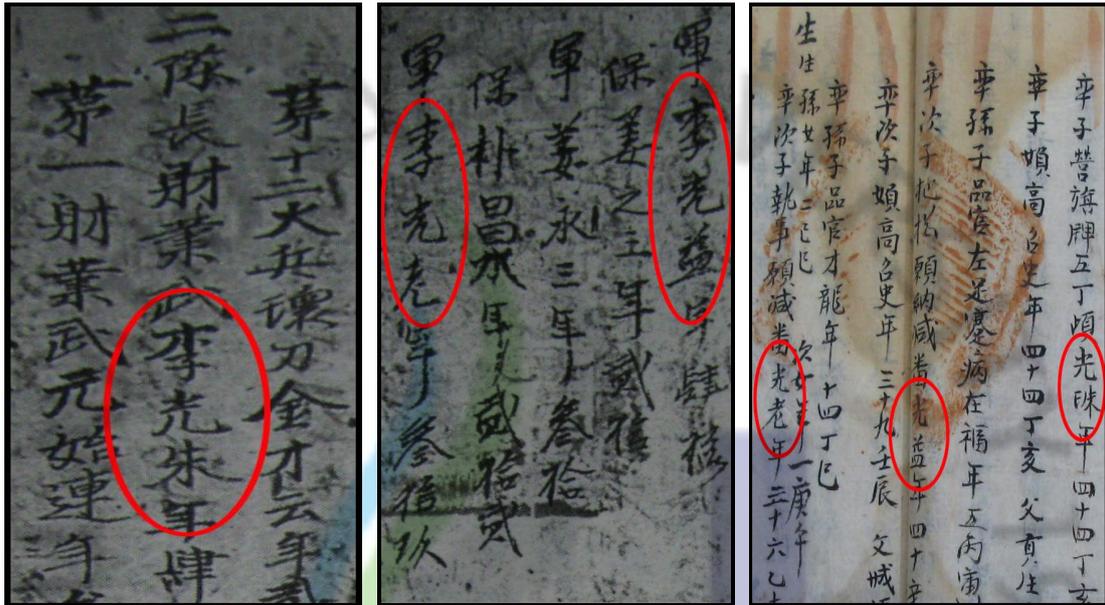
먼저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에서의 군병의 기재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군병도안’에서는 성명, 직역, 나이, 거주지뿐만 아니라 부(父)의 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서로 각

94) 김동진, 「19세기 제주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일지사, 1997), 17쪽.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그들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4>는 1870년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이 ‘호적중초’ 상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기재 사례



(가) 『대정군군병도안』 좌마대에 소속된 군병

(나) 『대정군군병도안』 굴산봉수에 소속된 군병

(다) 『하원리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의 기재 사례

위의 <그림 4>을 살펴보면 (가)는 ‘군병도안’에서 좌마대(左馬隊)에 소속되어 있는 이광주(李光朱)의 기재 사례로, 그는 2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군병도안’ 내에 기재된 그의 직역은 업무(業武)이고 특기는 사(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에는 이광주와 더불어 그의 동생으로서 굴산봉수(窟山烽燧) 소속인 봉군 이광익(李光益)과 이광노(李光老)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세 명은 같은 형제로서 ‘군병도안’ 내 각기 다른 병종(兵種)에 소속되어 지방군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들의 형제(兄弟)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다)의 ‘호적중초’ 자료로서 제주 ‘대정현하원리호적중초’에는 이광주 형제가 같은 호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⁹⁵⁾

95) 『濟州 河源里 戶籍中草 (1870, 4통 3호)』

戶主：營旗牌司果 李廷宗 (69세, 本-全州) / 父：業武 興春(故) / 祖：業武 世亨(故) / 曾祖：譯生 雨(故)
子：營旗牌五丁頭 光珠 (44세) / 次子：把摠願納減番 光益(40세) / 次子：執事願納減番 光老(36세)

이처럼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형제(兄弟) 또는 부자(父子), 친족(親族)이 함께 기재된 사례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자료를 더욱 보강하여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군병의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1870년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현황
(단위 : 명)

리명	호	구	남	여	‘군병도안’ 등재 군병	‘호적중초’ 등재 군병(%)
대포리	104	683	327	356	76	62(81.5%)
덕수리	81	585	226	359	45	35(77.8%)
도순리	101	628	238	390	49	35(71.4%)
동성리	231	1389	596	793	173	96(55.5%)
사계리	89	884	379	505	87	62(71.2%)
영락리	45	262	105	157	16	13(81.2%)
월평리	23	148	58	90	10	9(90.0%)
일파리	154	1260	527	733	205	75(36.6%)
중문리	130	964	382	582	83	54(65.0%)
하모리	146	1026	447	579	133	86(64.6%)
하원리	55	495	219	276	66	53(80.3%)
회수리	56	459	167	292	27	18(66.7%)
합 계	1,215	8,783	3,671	5,112	970	598(61.6%)

우선 ‘군병도안’에서 확인된 1,900명의 군병 가운데 ‘호적중초’가 남아 있어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을은 대포리, 덕수리, 동성리 등 총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970명의 군병들이다. 이들 중 분석 대상인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를 추적한 결과, 각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 군병은 모두 598명으로 약 61%에 해당하는 군병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마을별 호구현황을 참고하여 봤을 때, 월평리는 ‘군병도안’에 기재된

10명의 군병 중 9명(90.0%)을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대포리의 경우도 76명의 군병 중 62명(81.5%)에 해당하는 군병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월평리나 대포리 등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들의 신분이 호적중초 상에서 각 호(戶)의 호주(戶主) 또는 자(子), 제(弟) 등으로 기재되어 대부분 70% 이상 확인이 가능했던 반면에 일과리의 경우는 호적중초에 등재된 군병들을 파악해 본 결과 205명의 군병 중 75명(36%)에 해당하는 군병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즉, 각 마을별로 ‘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기재되어진 군병을 파악하는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군병도안’과 ‘호적중초’를 작성할 당시의 기재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해도 일과리처럼 ‘군병도안’에서 확인된 205명의 군병 중 1870년 당시 마을 인구가 1260명에 달하면서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의 수가 75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호적중초’와 ‘군병도안’의 상호관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이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호적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군역부과대상으로서 호적의 본분(本分)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가는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⁶⁾

이처럼 각 군병들은 ‘군병도안’에서 보여지듯이 성정군, 마대, 속오군 등에 편제되어 당시 대정현의 지역방어체제를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군병도안’의 성정군, 마대, 속오군, 봉·연군, 모슬·차귀진방군, 군수수술, 교직생의 편제에 따라 ‘호적중초’ 자료에 나타난 598명 군병의 직역이 어떠한지 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들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군병은 모두 598명이다. 군병의 마을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성리(96명), 하모리(86명), 일과리(75명), 사계리(62명), 대포리(62명), 중문리(54명), 하원리(53명), 덕수리(35명), 도순리(35명), 회수리(18명), 영락리(13명), 월평리(9명) 순으로 분포하고, 이들 군병 가운데에서 ‘군병도안’의 각 병종별 편성에 따라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의 직역 실태는 다음의 표에서 설명할 수 있다.

96)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438쪽.

<표 13> 『대정군군병도안』의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 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성정군 (337명)	가솔				1					1				2
	교생		1						4	3	1	1		10
	별감												1	1
	성장				1			1	1					3
	유생	3										2		5
	유품관												1	1
	유학	3			1	7	2		4	1	2	8	3	31
	유향별감				2		2			1	1	3		9
	자망				1									1
	작리			1										1
	장인				1									1
	장의	1		1	2	8			1		1	3		17
	진무				1				1					2
	천총		1								1			2
	청금				1									1
	품관	2		1	2	1		1			2		1	10
	풍헌				1									1
	학생												1	1
	한량				2									2
	호장				1	1	1		2	2	1			8
	진리						1							1
업유								1					1	
원생								1					1	
합계	9	2	3	17	17	6	2	15	10	7	18	6	112	

위의 <표 13>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병도안’의 성정군(城丁軍)에 편성된 군병들 중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을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확인하여 그 직역 실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우선 ‘군병도안’의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337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112명으로, 약 33%에 해당하는 군병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유학(幼學), 장의(掌議), 교생(校生)·품관(品官) 등의 순으로, 대부분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31명으로, 사계리와 하원리 마을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장의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17명으로 이 또한 사계리 마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계리 마을을 중심으로 유학을 비롯하여 교생과 장의, 품관과 같은 직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본래 대정향교가 대정현 성내에 자리잡고 있다가, 효종 4년(1653)에 사계리로 옮겨지게 되면서 당시 사계리(지금의 서귀포시 안덕면) 근처 단산(簾山) 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정향교의 소재(所在)가 당시 사계리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계리에서는 유학을 비롯하여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장의, 교생과 같은 직역은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출입이 다른 계층에 비해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의 장의 직역인 경우는 당시 향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자금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고 ‘호적중초’상에서 장의의 직역을 모칭(冒稱)·모록(冒錄)하여 획득한 결과로, 상위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의를 비롯한 <표 13>에서 나타나는 유향별감(留鄕別監), 풍헌(風憲)과 같은 직역은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직역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유학이나 장의, 교생과 같이 양반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획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양인(良人) 정남(丁男)에 한해서 군역을 지냈던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군역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중초’상에는 분명히 유학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병도안’에 올라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양분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자라도 군역에서 모두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당시 제주지역 지방군을 편성하는데 있어, 군사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군역을 충당하는데 유학류의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 또한 함께 지방군에 편성되었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표 14> 『대정군군병도안』의 ‘마대’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 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마 대 (262명)	가솔			2							1			3
	교생	1			1	2					1			5
	목자												1	1
	별장						1							1
	사생									1				1
	서원										1			1
	성장					1				1				2
	약한					1								1
	기패		1										1	2
	담한	1		1							1			3
	유생												1	1
	유품관			1							1	3		5
	자망											1		1
	작리												1	1
	장의		1	1	1									3
	재직				1									1
	진무			1								1	1	3
	집사										1	2		3
	천총	1	1	1			2					1		6
	파총		1	1	1	1	1				1			5
품관	2	2	2	1	1	1		2	4	4	1	1	20	
한량		1	1			1					3		6	
호장										1			1	
합계	5	7	11	5	9	1	0	2	12	17	5	2	76	

위의 <표 14>는 ‘군병도안’의 마대(馬隊)에 편성된 군병 중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군병도안’의 마대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군병은 좌·우마대 각각 131명으로, 모두 262명인데 이들 중 ‘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군병은 76명으로 약 29%에 해당하는 군병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대에 편성된 군병들 중에는 품관(品官)직역을 지닌 자가 20명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많이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천총, 파총과 같은 군관직에 해당하는 직역과 한량, 교생, 유품관 등과 같은 직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말을 능숙하게 조련하고 탈 수 있는 자들로서 비교적 상층의 신분계층에 해당하는 자들이 마대에 편성되고 있었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5> 『대정군군병도안』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 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속오군 (655명)	가솔	3	1		9	4		1	5	4	2	1	2	32
	공생				2									2
	과직		2		1									3
	교생	1			1				1				1	4
	기관	1			1				1					3
	기수				1									1
	기패				3								1	4
	담한					2							1	3
	대궐생				1									1
	목자				1								2	3
	방군					4								4
	사령		1		2									3
	사생										2			2
	성장	1	1			2					1	1		6
	원생									2				2
	유품관			2		2					4	2	1	11
	자망				1					2				3
	작리			5						2	1	1		9
	장관		1									1		2
	장의									1				1
	장인				1									1
	진리							1						1
	진무	1			1									2
집사		1	1	2					1	1	4	2	12	
천총			1										1	
파총	4	5		1	1				2	2		1	1	17
품관	27	5	3	7	9			1	13	7	13	4		89

한량	1	2	3	3				2	1	4			16
호장			1	2				3		2		1	9
효음복호					1					2			3
합계	39	19	16	40	25	1	2	35	21	32	11	9	250

위의 <표 15>는 ‘군병도안’의 속오군(束伍軍)에 편성된 군병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을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확인하여 그들의 직역을 살펴본 것이다.

‘군병도안’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655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250명에 달하며, 약 38%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품관(品官) 직역자는 89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병은 가솔(假率) 직역을 지닌 자들로서 32명으로 파악되었고 이 밖에도 파총, 한량을 비롯해 작리, 답한, 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을 지닌 군병들이 속오군에 편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마을별 분포에 있어서도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은 대부분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성리(40명), 대포리(39명), 일파리(35명), 하모리(32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당시 지방의 예비군적인 성격을 지니는 보병 부대로서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은 각 거주하던 리(里)에 따라 초(哨)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들 군병의 직역 가운데에서 품관의 직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마대에 편성된 군병 중에도 또한 품관 직역을 지닌 자가 상당수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품관직역자가 제주지역 지방군의 여러 병종에 걸쳐 편성되어 지방군을 이루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품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본래 품관은 품계를 받은 모든 관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품관이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도감(都監)과 감관(監官) 등도 역시 품관이라 통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⁷⁾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의 품관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현에서 일어나는 실무에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였고, 당시 이들의 신분이 비록 양반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나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는 평민 또는 공·사천에 이르는 자들이 품관직을 역임할 정도로 신분상 많은 변화를 거쳐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품관직역을 지닌 자들이 대부분 예비군적인 성격을 지닌 속오군에 소속되어 지방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품관 이외에도 가솔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제주지역 가솔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대는 낮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천총, 파총, 장관 등의 군관직으로 신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호적중초’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⁹⁸⁾

그리고 당시 가장 하층역으로 인식되었던 방군, 답한, 목자의 직역을 지닌 군병들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호적중초’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답한(番漢)은 관둔답을 경작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19세기 답한의 신분적인 지위를 살펴보자면 중인 신분의 서얼 출신자, 업무(業武)의 시사(試射)에서 떨어진 자, 서원에서 낙강한 자, 품관층에서 할출(割出)된 자들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층으로 보고 있다.⁹⁹⁾ 이들은 대부분 ‘군병도안’ 안에서 속오군뿐만 아니라 마대 등에 주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직역 자체가 원신역으로서 상당한 고역(苦役)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내용은 『탐라록』에 나타난 「육고가(六苦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6고역(苦役)으로 아병(牙兵), 목자(牧子), 선격(船格), 과직(果直), 방졸(防卒), 봉군(烽軍)을 들고 있다.¹⁰⁰⁾ 이러한 6고역 계층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존재하였는데, 그들의 제주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6가지 직역을 영위하면서 가장 하층의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속오군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97) 전경목, 「조선후기 品官과 그들의 생활상」 『인문콘텐츠』창간호(인문콘텐츠학회, 2003), 245~246쪽.

98) 정수환,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23집(제주학회, 2003), 195쪽.

99) 김동진, 「18·19세기 番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제3호(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73~74쪽.

100) 6고역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따랐는데 본래 목자(牧者)·답한(番漢)·선격(船格)·과직(果直)·잡녀(潛女)·포작(鮑作)을 지칭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포작·지장(紙匠)·유군(遺軍)·답한·선격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목자·방군(防軍)·과직·선격·답한 혹은 포작·답한·목자·방군·선격·아병을 지칭하였다.(김동진, 앞의 논문, 61~62쪽).

<표 16> 『대정군군병도안』의 ‘봉·연군’·‘모슬·차귀진방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 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봉·연군 (218명)	가솔	1	1		1	1		1				4		9
	교생		1			1								2
	성장	1	1						2	1		2		7
	기패						1							1
	유품관					1								1
	자망			1						1	1	2		5
	집사		1	1							1	2		5
	천총	1		1	3	4	2	1	1	4	1	3		21
	파총	1						2	3					6
	품관		2			1			1			2		6
	장관	1							2					3
	군기감			1										1
	방군				2						2			4
합계	5	6	4	6	8	3	4	9	6	5	15	0	71	
모슬· 차귀진 방군 (244명)	가솔		1								1			2
	성장										3			3
	기패								1					1
	유품관										1			1
	자망				1									1
	집사								1					1
	파총								1					1
	품관										4			4
	장관								1					1
	방군								6		1			7
	서원직					1								1
	진부					1			1		4			6
	유학										1			1
	훈도										2			2
	사령										1			1
조방장										1			1	
호장										4			4	
합계	0	1	0	1	2	0	0	11	0	23	0	0	38	

위의 <표 16>은 ‘군병도안’의 봉·연군(烽·煙軍)과 모슬·차귀진방군(募瑟·遮歸鎮防軍)에 편성된 군병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의 직역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군병도안’의 봉·연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218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71명에 그쳤고, 약 36%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천총(千總), 가솔(假率), 성장(城將)과 같은 군관직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 가운데 품관 직역자가 89명에 달하고, 봉·연군에 속한 군병 중 천총 직역자가 21명으로 다른 직역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시 역을 담당하던 하층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역 또는 천역(賤役)을 피하고, 조선후기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편승하여 신분 상승을 피하고 역을 경감하기 위해 ‘호적중초’ 상에서 직역을 모략·모칭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 병종별로 신분상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자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략·모칭 현상은 조선후기 당시 품관, 장의, 교생을 비롯한 군관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병도안’에는 모슬진방군이 116명, 차귀진방군이 128명으로 총 244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직역을 ‘호적중초’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 불과 38명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이는 다른 병종들에 비해 방군에 속한 군병들이 ‘호적중초’에 기재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이들의 직역은 방군을 포함하여 유학, 품관, 호장과 같은 양반 혹은 중인층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의 <표 16>에서 확인된 것은 아주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당시 조선시대 제주사회에 있어 6고역에 해당되는 고역으로 간주되었던 봉·연군과 방군에는 하층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교생과 같은 양반신분에 해당하는 계층과 더불어 파총, 천총, 조방장 등과 같은 군관직역을 지닌 중·상민신분의 계층이 함께 제주지역 지방군에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대정군군병도안』의 ‘군수수술’·‘교직생’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 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군수수술 (118명)	가솔				1									1
	집사									1				1
	파총									1				1
	진무				1				1		1	1		4
	사령				5									5
	호장				2		1					2		5
	기관	1												1
	천총	1										1		2
	작리			1							1			2
	공생					1								1
	기수					2								2
	담한					1								1
	직군					1								1
	피장					1								1
	향리					1								1
진리							1						1	
합계	2	0	1	16	0	2	0	1	3	2	3	0	30	
교직생 (66명)	공생				1									1
	관노				1									1
	교생	1			1	1		1	2	1				7
	목자												1	1
	습마				1									1
	유향별감											1		1
	작리				2									2
	직군				2									2
	진무				2									2
	품관	1												1
	학생									1				1
	호장				1									1
합계	2	0	0	11	1	0	1	2	2	0	1	1	21	

위의 <표 17>은 ‘군병도안’의 군수수솔(郡守隨率)과 교직생(校直生)에 편성된 군병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의 직역을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먼저 ‘군병도안’의 군수수솔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118명으로, 이들 중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은 30명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대정군수의 휘하에 있던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사령(使令), 호장(戶長), 진무(鎭撫) 등이 다양한 직역을 가진 군병들로, 대부분 관청(官廳)에 속하여 말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사령의 경우 일종의 이서(吏胥)로서 사환(使喚)을 의미하는 낮은 직임이었으나, 호장의 경우는 향리층의 수장에 해당하는 직역으로서 ‘군병도안’에서 군수수솔뿐만 아니라 교직생과 비교적 고역(苦役)에 해당하는 방군에도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병종에 편성된 군병들의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병도안’의 교직생에 편성된 군병을 살펴보면 총 66명 중 ‘호적중초’에서 직역이 확인된 군병은 21명으로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직생에 속한 군병들의 직역은 교생을 비롯하여 진무, 작리 등으로 확인되며, 특이할 만한 점은 이들 가운데 ‘관노(官奴)’가 1명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군병도안’ 내 교직생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동성리 마을에 등장하는, 관노(官奴) 직역을 가진 군병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노비(官奴婢)의 경우 관아가 있었던 대정현성내의 동성리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관노(官奴)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군병도안’ 내에서 교직생에 편제되어 ‘육고자(肉庫子)’의 직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고자는 ‘육고(肉庫)’에 속하여 관청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로서 그 신분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병도안’의 각 병종별 편성에 따라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살펴보면, 속오군에 소속된 군병은 655명으로 이들 중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은 250명에 달하고, 성정군은 총 337명 중 112명의 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대의 경우는 262명 중 76명, 봉·연군

은 218명 중 71명, 모슬·차귀진 방군은 244명 가운데 71명의 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수수술은 118명 가운데 30명을, 교직생의 경우는 66명 가운데 21명의 군병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장, 파총, 천총과 같은 군관 직역이 각 병종별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가운데 ‘호적중초’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직역은 품관, 가솔, 천총의 순으로 이들 직역을 지닌 군병들은 12개 마을 중 영락리를 제외한 11개 마을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군병은 ‘군병도안’에서도 속오군과 봉·연군에 가장 많이 편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학, 장의와 같은 양반신분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대부분 ‘군병도안’에서 성정군에 편제되어 있었고, 사계리와 하원리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계리에 대정향교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류의 양반신분층이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군병도안’의 성정군을 비롯하여 모슬·차귀진방군 등에서 유학이나 장의, 교생과 같이 양반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군병이 확인되고, 교직생에 편성되어 있는 천민 신분인 관노비가 등장하는 등 그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는 조선후기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지방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의 차등(差等)이 미약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양반층뿐만 아니라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직역을 지닌 사람들이 각 군에 편제되어 제주지역 지방군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제주 지방군제의 개편에 따른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주지역 지방군의 시기별 편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에 남아있는 1870년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편제와 그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호적중초』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지방군에 편성된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 편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예로부터 제주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빈번한 표류·표착을 통해 중국, 일본, 유구, 안남 등과 끊임없이 역사적 긴장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제주를 해상 근거지로 삼고자 하였던 왜구의 빈번한 침입에 늘 대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제주 해안에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필요한 식량·재물을 확보하기 위해 약탈 혹은 방화를 일삼아 온 왜구를 격퇴하고자 제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즉, 조선시대에는 해안가에 설치된 38개의 연대와 먼 바닷가를 조망하며 왜구 등의 침입을 감시하고자 하였던 25개의 봉수, 명월진 등을 포함한 9개의 진성, 그리고 제주읍성과 대정·정의현성 등에 편제된 군병들을 주축으로 제주의 방어체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민들로 하여금 제주지역 지방군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납정은 군역을 과중하게 부담해야 했고, 이와 더불어 각종 세금과 부역을 부당하게 수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양인 납정은 의무적으로 군역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납정들은 납속, 모칭 등의 방법으로 양반신분을 취득하여 군역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당시 제주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군(軍)에 편성된 군병들의 직역을 밝힘으로써 조선후기 다양한 직역을 지닌 군병들이 어떠한 병종(兵種)에 소속되어 제주지역 지방군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

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한 조선후기 지방군의 변화 양상과 함께 제주 지역 지방군의 시기별 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지방의 군사제도는 각 거주지 중심의 방어 훈련을 기본으로 한 속오군(束伍軍)제도와 이러한 속오군 등의 지방군 훈련과 지휘를 담당하면서 지방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영장제도(營將制度)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목사가 육군과 수군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여 해안 일대에 왜구가 출몰하거나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대처하면서 ‘독립적인 방어체계’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제주지역은 군병을 편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마병(馬兵)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예로부터 제주지역이 목장지대로써 말이 다른 곳에 비해 풍족하여 기병을 양성하기에 용이했던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지방군의 시기별 분포에 따라 현종 13년(1847) 제주 군제개혁을 기점으로 마대와 속오군이 증설되는 한편 별아병이 창설되면서 지방 군사력이 증강되었고 또한 방어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마대의 경우는 모두 14초로 이전보다 총 4초가 증편되었고, 속오군은 모두 60초로 이전에 비해 총 30초가 증편되었다. 그리고 별아병의 경우는 10초가 신설되었는데, 이 때 방영에서 모든 마대와 속오를 일괄 지휘·감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정과 정의, 양 진(鎭)으로 군사 지휘·감독권이 이양되었다. 이러한 군제의 개혁은 지역 방어에 효율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군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1847년 제주 군제개혁 이후 『탐영사례』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군병의 편성이 당시 군제개혁의 내용을 충실한 반영하고 유지한 결과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군병도안’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사회에서 군적이 갖는 의미와 ‘군병도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에 따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군병도안’에 편성된 군병들의 각 병종별 편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군적(軍籍)이란 당시 군병들의 소속과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당시

지방군에 편제된 군병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제주에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1870년(고종 7)에 작성된 ‘군병도안’에는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주요 병종인 마대, 속오군, 아병, 성정군, 군수수술 등의 편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군역은 총 1,900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정군, 마대, 속오군 등에 편제된 군병 등은 신역 외에 속오역을 겸역으로 지니고 있었던 반면 봉·연군에 편제된 군병은 원신역자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병들은 각 병종별로 대부분 ‘업무’와 ‘교생’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니고 있는 반면 ‘군병도안’ 내에서 직역 자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기는 사(射), 환도(還刀), 장(杖), 창(槍) 이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데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들은 대부분 ‘업무’와 ‘교생’직역자로서 ‘사’ 또는 ‘환도’의 특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은 신분적으로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활과 칼을 다루는 데 비교적 능숙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성정군에 편성하여 제주지역 방어에 주력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1870년 ‘군병도안’ 이 시기에 해당하는 ‘호적중초’ 자료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당시 군적에 기재된 군병들이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는 어떠한 직역으로 기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군적에 기재된 1,900명의 군병 중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정현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군병은 총 970명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12개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그들 군병의 직역이 확인된 수는 598명으로 약 62%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가솔, 천총 등과 같은 군관 직역은 물론이고 유학, 유향별감, 품관 등 신분상으로는 양반층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닌 군병들로서 각 병종별로 그 직역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직역의 차등(差等)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양한 직역을 지닌 자들이 군역을 지니고 각 군에 고르게 편제되어 제주지역 지방군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에 일어난 임진왜란 등의 전쟁은 전반적으로 조선사회의 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군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정에서는 이러한

백성에게 부역과 군역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조직적으로 통치·지배하기 위해 각 군(軍)에 편제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속오군, 마대를 비롯한 각 병종들은 그 편성 따라 각각의 군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병도안’ 내의 각 병종별로 편제된 군병들은 군관 직역을 비롯하여 유학류와 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을 지니고 당시 시대 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신분직역의 상향 이동을 꾀하였던 것이다. 즉 이러한 모략·모칭의 결과로 대부분의 하층민의 경우 비교적 낮은 계층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 봉·연군 또는 방군 등에 편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보다 높은 상층의 직역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어느 한 시기의 특정 지역에 근거를 두고 지방 군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정치·사회·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역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 지방 군제는 각 지역에 근거를 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편성, 유지됨에 각 지역별로 군제 운영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라는 특정한 지역의 군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 일차적인 사료라 할 수 있는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지방군의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어 한계가 많았다. 이에 향후 자료를 보강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방 군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역사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 제주지역 지방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정군군병도안(大靜郡軍兵都案)』
『제주계록(濟州啓錄)』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摠錄)』
『제주사례(濟州事例)』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주읍지(濟州邑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摠覽)』
『탐영사례(耽營事例)』
『각사등록(各司謄錄)』
김석익, 『탐라기년(耽羅紀年)』
남만리, 『탐라지(耽羅誌)』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_____,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진, 『탐라지(耽羅志)』
이형상, 『남환박물관(南宦博物)』
_____,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대정현대포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大浦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덕수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도순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道順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동성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東城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월평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月坪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중문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中文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下摹瑟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하원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河源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회수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廻水里戶籍中草)』

2. 연구논저

1) 단행본

고찬화·김천형 공편, 『濟州의 近世史-朝鮮王朝實錄』, 성민출판사, 2002.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김 홍, 『한국의 군제사』, 학연출판사, 2001.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制 研究』, 혜안, 1999.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이원진 씬·김찬흡 외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지역변동 연구』, 일조각, 1993.
 이흥두, 『조선시대 신분변동 연구-천인의 신분상승을 중심으로-』, 혜안, 2000.
 정종목 (원작 KBS 역사스페셜), 『<탐라순력도> 제주는 군사 요새였다』 『역사스페셜』3, 효형출판, 2001.
 정약용 저/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IV)』, 창작과 비평사, 198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지편집위원회, 『濟州道誌』 제2권, 제주도, 2006.
 진영일, 『고대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최형국, 『조선무사』, 인물과 사상사, 2009.
 최효식, 『朝鮮後期 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지리지총서 『邑誌』6 제주도, 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2) 논문 및 기타

강석화, 「조선후기 군역제도의 변화(상)」 『군사』21집,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_____, 「조선후기 군역제도의 변화(하)」 『군사』22집,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
 _____,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제36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 6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2.
 고창석, 「〈濟州東伍軍籍簿〉解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권인혁,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態-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탐라 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_____, 「資料解題 : 〈耽羅營事例〉」 『제주도사연구』 제5집, 제주도사연구회, 1996.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김동진,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_____,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 _____,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_____,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제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_____, 「인구와 호적」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2008.
-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_____,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김순옥, 『18, 19세기 江原道의 地方軍 편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우철, 「朝鮮後期 東伍軍 給保·給復策의 推移」 『진주사학』 4호, 전주대학교 진주사학연구회, 1996.
- _____, 「조선후기 東伍役의 徭役化 과정-東伍軍 操鍊制度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제3·4호, 고려사학회, 1998.
- _____, 「조선후기 江原道 地方軍制의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24호, 조선시대사학회, 2003.
- _____,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 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 서태원, 「속오군의 설치의의에 대한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논문집』 제13호, 1993.
- _____, 「朝鮮後期 營將制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본집, 한국동서사학회, 2000.
-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오종록, 「조선 초기 正兵의 軍役-1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창간호, 고려사학회, 1996.
- 이준구, 「朝鮮後期の <業儒·業武>와 그 地位」 『진단학보』 60권, 진단학회, 1985.
- 이현수, 「조선말기의 군적-육군박물관 소장 군적문서의 분석-」 『학예지』 3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3.

- _____, 「조선전기 군적 작성의 추이」 『육사 논문집』 Vol.49, 육군사관학교, 1995.
- 이흥두, 「東伍軍을 통해 본 朝鮮後期 賤人의 身分變動」 『군사』 34집,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장필기, 「17世紀 前半期 東伍軍의 性格과 位相」 『사학연구』 제42호, 한국사학회, 1990.
- 전경복, 「조선후기 品官과 그들의 생활상」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 _____,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제33호, 고문서학회, 2008.
- 정구복, 「1596年 平安道 鎭管官兵編伍冊」 『고문서연구』 제5권, 한국고문서학회, 1994.
- 정수환, 「19세기 假率의 성격과 濟州社會」 『제주도연구』 제23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차문섭, 「<속오군>연구」 『동양학』 1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1.
- 허원영, 「19세기 濟州島 戶籍에 나타난 職役변동과 賦稅運營-〈濟州大靜縣沙溪里 戶籍中草〉의 職役기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 _____,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